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간접투자증권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외국투자회사명: 엠앤지인베스트먼트펀드 (1) [M&G Investment Funds (1)]

2. 국내판매대행회사: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교보증권: www.iprovest.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Tel. 1544-0900)
- 외환은행: www.keb.co.kr,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1544-3000)
- 하나은행: www.hanabank.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1588-1111)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www.scfirstbank.com,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1588-1599)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www.kr.hsbc.com,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 (02-2004-0123)

3.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회사 주식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본 설명서에서 언급되는 외국자산운용회사는 영국 프루덴셜 주식회사(Prudential plc UK, 이하 “PLC UK”)의 계열사입니다. PLC UK와 계열사들은 세계적인 금융 서비스 그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PLC UK는 보험·자산운용 및 금융서비스를 직접 또는 자회사와 계열사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PLC UK는 지난 160여년간 활동해 오면서, 미화 약 5,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PLC UK는 미국에 본사를 둔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는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본 문서는 M&G INVESTMENT FUNDS (1) (이하 “본 펀드” 또는 “본 회사”)에 관한 투자설명서 (이하 “본 투자설명서”)로서, 2001년 개방형투자회사규정 (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 Regulations 2001) 및 영국재정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이하 “FSA”) 발행 업무규정지침서의 일부로서 공포된 신공동투자기구지침서 (New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Sourcebook)에 포함된 규정들에 따라 준비되었다.

본 투자설명서의 사본은 FSA 및 보관회사인 The Royal Bank of Scotland plc에 송부되었다.

본 투자설명서는 발효일 당시의 개정사항을 포함한 법규, 관행 그리고 정보에 기초하며, 규정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새로운 투자설명서가 공포된 경우 본 펀드는 구 투자설명서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따라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소지하는 투자설명서가 가장 최근에 공포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M&G Securities Limited는 본 펀드의 수권법인이사 (Authorized Corporate Director, 이하 “ACD”)로서 본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책임진다. M&G Securities Limited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본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본 펀드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주식의 판매와 관련하여 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으며, 만약 그러한 정보나 진술이 제공되었다더라도 이는 본 펀드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해석, 간주될 수 없다. 본 투자설명서가 교부되었거나 (어떠한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의 판매되었다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본 펀드의 내용이 본 공포일 이후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주식의 판매는 일부 국가에서 제한될 수 있다. 본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야 한다. 본 투자설명서는, 본 펀드의 주식 청약이나 청약의 유인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그러한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 간주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자를 상대로 한 본 펀드의 주식 청약이나 청약의 유인 행위가 불법으로 다루어지는 국가에서 그러한 자에게 청약이나 청약의 유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해석, 간주될 수 없다.

본 펀드의 주식은 어느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아니하였다.

본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본 투자설명서에서 소개된 내용이 법률, 세무, 투자 등에 관한 자문인 것으로 해석, 간주할 수 없으며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하여 별도로 본인의 전문적인 자문가(기관)와 상담할 것이 권고된다.

본 펀드의 정관은 각 주주(통지받은 것으로 간주됨)에게 구속력이 있다.

본 투자설명서는 M&G Securities Limited에 의하여 2000년 금융서비스및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되었다.

보관회사는 본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따라서 관련규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적인 자문가(기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목 차

정의

1. 본 펀드
2. 본 펀드의 구조
3. 본 펀드의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
4. 판매수수료 및 관리보수 등
5. 주식
6. 관리 및 행정
7. 보관회사
8. 자산운용회사
9. 행정 및 명의개서 업무
10. 감사
11. 주주명부
12. 주식의 매입
13. 주식의 환매
14. 주식의 전환
15. 기타 거래 정보
16. 인지세
17. 거래의 제한
18. 본 펀드의 거래 정지
19. 준거법
20. 본 펀드 가격의 평가
21. 순자산가치의 산출
22. 각 하위펀드 및 주식클래스 별 주당 가격
23. 가격결정원칙
24. 가격의 공시
25. 위험요소
26. 보수 및 비용
27. ACD의 수수료
28. 자산운용회사의 보수
29. 보관회사의 보수, 수수료 및 비용
30. 하위펀드간 보수 및 비용의 분담
31. 주주총회 및 의결권
32. 과세
33. 수익균등화
34.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의 청산
35. 일반사항
36. 기타 문의
37.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판매
38. 하위펀드의 판매

별첨 I: 본 펀드의 자산운용 및 차입권한

별첨 II. 적격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소

별첨 III. 유로화 주식클래스 주주를 위한 정보

별첨 IV. 하위펀드별 운용성과 (유로화 주식클래스)



정 의

증자부 주식: 본 펀드의 주식의 한 종류로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본으로 누적되는 주식;

ACD: 본 펀드의 수권법인이사, 즉, M&G Securities Limited;

ACD위임계약: 본 펀드가 ACD에게 본 펀드의 관리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2001. 10. 12.자로 체결한 계약;

주식클래스: 단일 하위펀드의 전체 주식 또는 단일 하위펀드와 관련된 주식의 특정 클래스(들);

COLL: FSA가 발행한 신공동투자기구지침서의 해당 장 또는 규정;

고객계좌: FSA의 업무규정지침서에 따라 본 펀드가 보유하는 은행계좌;

본 펀드: M&G Investment Funds (1);

영업일: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은행 휴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기간 및 기타 ACD가 정한 날;

보관회사: 본 펀드의 보관회사, The Royal Bank Scotland plc;

소액주: 소액주 (소액주 1천주가 보통주 1주를 구성);

FSA: 영국재정청;

정관: 개정사항을 포함한 본 펀드의 정관;

자산운용회사: ACD가 자산운용회사로 선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사로서 제8장에 기재되어 있음;

M&G OEIC:

M&G Investment Funds (1) (본 펀드),

M&G Investment Funds (2),

M&G Investment Funds (3),

M&G Investment Funds (4),

M&G Investment Funds (5),

M&G Investment Funds (6),

M&G Investment Funds (7),



M&G Investment Funds (8),

M&G Global Dividend Fund,

또는 기타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설립되어 ACD에 의하여 운용되는 개방형투자회사 (open-ended investment company);

상당한(상당히): 투자목적 내에서 70% 이상;

회원국: 어느 특정 시점에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회원인 국가;

순자산가치 또는 NAV: 본 펀드의 정관에 따라 본 펀드(또는 문맥상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펀드)의 예탁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주된(주로): 투자목적 내에서 적어도 포트폴리오의 80% 이상;

관련규정: FSA가 발행한 업무규정지침서의 일부로서 공포된 신공동투자기구지침서에 포함된 규정들 및 2001년 개방형투자회사규정;

SDRT: 인지세;

예탁자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회사에 예치된 본 펀드의 예탁자산;

주식: 본 펀드의 주식 (소액주 및 보통주를 포함하여) 또는 기타 M&G OEIC의 주식;

주주: 본 펀드의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주식의 소유자;

하위펀드: 본 펀드의 하위펀드 (본 펀드의 예탁자산 중 분리되어 할당된 부분을 보유함) 및 각 하위펀드의 투자목적에 따라 투자되고 할당된 고유의 자산 및 부채;

전환: M&G OEIC의 한 클래스 또는 하위펀드의 주식을 다른 클래스 또는 하위펀드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



1. 본 펀드

- 1.1 **M&G INVESTMENT FUNDS (1)**는 FSA에 의하여 2001. 6. 6. 등록번호 IC 110으로 인가되어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개방형투자회사로 설립되었다. 본 펀드는 존속기간의 제한 없이 설립되었다. 본 펀드는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공동투자기구(UCITS)에 관한 EC지침서(EC Directive)상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FSA가 인증한다.
- 1.2 본 펀드의 주사무소는 Laurence Pountney Hill, London EC4R 0HH에 위치하며 동 주소는 영국 내에서 본 펀드에 대한 통지 기타 문서 송달의 장소로 기능한다. 본 펀드는 부동산 기타 유형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한다.
- 1.3 본 펀드의 기본통화는 영국 파운드화이다.
- 1.4 본 펀드의 현재 최대 자본은 £250,000,000,000이고 최소 자본은 £100이다. 본 펀드의 주식은 액면가가 없고, 따라서 본 펀드의 자본은 항상 본 펀드의 현재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다.
- 1.5 본 펀드의 주주는 본 펀드의 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5장 – 위험요소 참조)
- 1.6 본 펀드는 ‘전환형펀드’ 형태(관련규정에서 정의됨)로 설립되었으며, ACD는 FSA의 승인 하에 다양한 하위펀드를 설립할 수 있다. 새로운 하위펀드 또는 주식클래스의 설립시마다 이러한 새로운 하위펀드 또는 주식클래스에 관한 정보를 반영한 개정 투자설명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2. 본 펀드의 구조

- 2.1 본 펀드는 엄브렐라 구조의 회사형 펀드이다. 각 하위펀드의 자산은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취급되고 각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따라 운용된다.
- 2.2 엠앤지인베스트먼트펀드 (1) [M&G Investment Funds (1): 이하 “본 펀드” 또는 “본 회사”라 함]의 하위펀드 가운데 판매대행회사가 대한민국에서 판매할 펀드는 다음과 같다.

구분	하위펀드명 (영문펀드명)	거래통화 / 주식클래스
주식형	엠앤지 미국펀드 (M&G American Fund)	유로화 / 유로클래스 A
	엠앤지 아시안펀드 (M&G Asian Fund)	
	엠앤지 유럽펀드 (M&G European Fund)	
	엠앤지 유럽중소형주펀드 (M&G European Smaller Companies Fund)	
	엠앤지 글로벌베이직펀드 (M&G Global Basics Fund)	



	엠앤지 글로벌리더스펀드 (M&G Global Leaders Fund)	
	엠앤지 일본펀드 (M&G Japan Fund)	
	엠앤지 범유럽펀드 (M&G Pan European Fund)	

2.2.1 각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투자방침, 세부사항은 별첨 III.에 기재되어 있다. 각 하위펀드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따른 투자 및 차입권한에 관한 사항은 별첨 I.에 기재되어 있으며 각 하위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적격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은 별첨 II.에 기재되어 있다.

2.3 둘 이상의 하위펀드가 존재하는 경우, 각 하위펀드는 각자의 고유한 자산, 부채가 귀속되는 특정한 자산과 투자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며, 투자자는 각 하위펀드를 별개의 투자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2.4 다만 투자자들은 본 펀드의 채권자가 어느 하위펀드로부터 채무가 발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본 펀드의 모든 자산을 책임재산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야 한다. 본 펀드를 상대로 채권집행절차를 진행하는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하위펀드의 자산이 다른 하위펀드로 재할당될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자산의 재할당이 발생한 경우 ACD는 차기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장 – 위험요소 참조).

2.5 각 하위펀드는 그 하위펀드에 관련된 수수료, 채무, 비용을 부담하며 하위펀드 내에서는 각 주식클래스별로 주식클래스의 발행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분담된다.

2.6 어느 특정한 하위펀드에 귀속되지 않는 자산, 책임, 비용, 수수료 등은 ACD가 주주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정하다고 판단한 방식에 따라 분담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통상은 하위펀드들의 순자산가치 비율에 따라 모든 하위펀드에게 안분된다.

3. 본 펀드의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

3.1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M&G Investment Funds (1)의 각 하위펀드별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하위 펀드명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
엠앤지 미국펀드	본 펀드의 목적은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북미지역(캐나다 포함)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재산의 전부가 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북미지역에 상장 또는 등록되거나 북미 내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



엠앤지 아시안펀드	본 펀드의 유일한 목적은 장기적인 자본증식이다. 본 펀드는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70% 이상 을 아시아 지역(오세아니아 지역을 포함)의 다양한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전부가 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유가증권을 제외한 글로벌 유가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엠앤지 유럽펀드	본 펀드는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펀드는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80% 이상 을 유럽(영국 제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한다. 신탁재산의 전부가 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상장 또는 등록되었지만 유럽 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의 선정시 배당 소득도 부수적으로 고려된다.
엠앤지 유럽중소형주펀드	본 펀드는 유럽의 소형주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엠앤지 글로벌베이직펀드	본 펀드는 기초산업 (1차 또는 2차 산업) 주식 및 그러한 산업을 서비스하는 회사 주식에 자산의 70% 이상 을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펀드로서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엠앤지 글로벌리더스펀드	본 펀드는 장기적으로 토탈리턴(자본의 증식 및 배당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펀드매니저가 해당 섹터를 선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한다.
엠앤지 일본펀드	본 펀드는 일본의 경제 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일본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엠앤지 범유럽펀드	본 펀드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회사의 주식에 자산의 70% 이상 을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토탈리턴(자본의 증식 및 배당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펀드는 유럽 이외에 소재한 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그 회사의 수입의 대부분이 유럽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유발되어야 한다.

4. 판매수수료 및 관리보수 등

4.1 판매수수료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대한민국의 투자자에게 각 하위펀드의 판매수수료로서 매입신청 금액(투자원금)의 일정비율을 아래와 같이 부과한다.

구분	하위펀드	선취 판매수수료
주식형	엠앤지 미국펀드	2.0%
	엠앤지 아시안펀드	
	엠앤지 유럽펀드	
	엠앤지 유럽중소형주펀드	
	엠앤지 글로벌베이직펀드	



	엠앤지 글로벌리더스펀드	
	엠앤지 일본펀드	
	엠앤지 범유럽펀드	

4.2 환매수수료: 없음

4.3 전환수수료: 1.0% (단,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Euro€25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전환수수료를 Euro€25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함.)

4.4 자산운용보수 및 ACD 보수

4.4.1 ACD 가 선임한 자산운용회사가 본 펀드의 하위펀드에 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ACD 는 각 하위펀드의 각 주식클래스로부터 연간 보수를 지급받는다. 자산운용회사의 보수는 ACD 가 수령하는 아래의 보수 가운데에서 안분하여 지급된다.

4.4.2 또한 ACD 는 본 펀드의 행정대리인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대비 연 0.15%를 각 주식클래스로부터 지급받는다.

4.5 자산보관회사의 보수

자산보관회사의 보수는 ACD 의 보수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 해당 하위펀드의 자산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자산보관회사의 보수는 ACD 와 자산보관회사 간에 합의된다.

자산보관회사의 보수:

- 예탁자산의 ₩ 150,000,000까지에 대하여 0.0075%
 - 예탁자산의 ₩ 500,000,000까지에 대하여 0.005%
 - 예탁자산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0.0025%
- 이러한 보수율은 관련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4.6 ACD 및 자산운용보수 (순자산가치 대비)

구분	하위펀드	ACD의 A 클래스 연간 보수율	ACD의 행정대리인 및 명의개서 대리인으로서 연간 보수율
주식형	엠앤지 미국펀드	연 1.50%	연 0.15%
	엠앤지 아시안펀드	연 1.50%	연 0.15%
	엠앤지 유럽펀드	연 1.50%	연 0.15%
	엠앤지 유럽중소형주펀드	연 1.50%	연 0.15%
	엠앤지 글로벌베이직펀드	연 1.75%	연 0.15%
	엠앤지 글로벌리더스펀드	연 1.75%	연 0.15%



	엠앤지 일본펀드	연 1.50%	연 0.15%
	엠앤지 범유럽펀드	연 1.50%	연 0.15%

5. 주식

5.1 하위펀드 내의 주식클래스

5.1.1 하나의 하위펀드와 관련하여 수개의 주식클래스가 발행될 수 있다.

5.1.2 하위펀드는 ACD의 결정에 따라 더 많은 주식클래스를 발행할 수 있다.

5.1.3 증자부 주식의 주주는 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지 않고 수익은 매년 또는 중도에 자동적으로 해당 하위펀드의 자본에 납입된다. 그러한 주식의 가격은 관련 세법상의 공제금을 제외하고 본 펀드 내에 수익의 유보로서 계속 반영된다.

5.1.4 하위펀드에는 다양한 주식클래스가 있고, 각 주식클래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수수료 및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하위펀드 내의 주식클래스들에 대한 비례적인 이익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1.5 본 펀드 주식의 매매가 해당 하위펀드의 자산이 거래되는 통화와 다른 통화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환전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ACD는 그러한 환전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주식클래스 이외의 다른 주식클래스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중대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1.6 복수의 주식클래스 및/또는 하위펀드가 발행되는 경우에, 주주는 (일정한 제한 하에서) 그가 보유하는 하위펀드의 주식클래스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한 하위펀드 내의 다른 주식클래스의 주식 또는 다른 하위펀드나 다른 M&G OEIC 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의 전환 방법 및 제한은 본 투자설명서 제14장에 기재되어 있다.

6. 관리 및 행정

6.1 ACD

6.1.1 ACD는 M&G Securities Limited로서 1906. 11. 12. 당시 영국의 회사법 (Companies Acts 1862 to 1900)에 따라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ACD의 최종 모회사는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 설립된 PLC UK이다.



6.1.2 등기된 사무소 및 본부:

Laurence Pountney Hill, London EC4R 0HH

자본주식수:

수권자본	£ 100,000
발행 및 납입자본	£ 100,000

이사:

- Miss Deborah Carter,
- Mr. Christopher Jackson,
- Mr. Martin Lewis,
- Mr. Graham MacDowall,
- Mr. Laurence Mumford,
- Mr. William Nott,
- Mr. Edward Rosengarten,
- Mr. Leslie Scrine,
- Mr. John Talbot

상기 이사 중 어느 누구도 M&G Group 내 다른 회사 이외 ACD의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어떤 중요한 영업활동도 영위하지 아니한다.

6.1.3 ACD는 관련규정에 따라 본 펀드의 관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ACD는 본 펀드 외에 M&G Investment Funds (2), M&G Investment Funds (3), M&G Investment Funds (4), M&G Investment Funds (5), M&G Investment Funds (6), M&G Investment Funds (7), M&G Investment Funds (8) 및 M&G Global Dividend Fund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책무를 부담한다.

6.2 위임의 계약기간.

6.2.1 ACD 위임계약에 따라 ACD가 최초 3년의 기간 동안 수권법인이사로 임명된다. 그 이후에는 12개월의 사전 서면통지에 의하여 ACD 또는 본 펀드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ACD가 본 펀드 또는 보관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본 펀드 또는 보관회사가 ACD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즉시 해지할 수 있다. FSA가 ACD의 후임으로 선정된 자를 승인할 때까지 ACD는 교체되지 않는다. 주주 또는 주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받은 자는 정규 영업시간 내에 ACD의 사무소에서 ACD 위임계약을 열람할 수 있다.

6.2.2 ACD는 ACD 위임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의 비율에 따른 보수, 비용 및 기타 잔존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ACD의 업무상실로 인한 여타의 보상은 계약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ACD 위임계약은, ACD의 의무이행 과정에서 ACD의 과실, 채무불이행, 계약위반 또는 선관임무 위반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 이외의 책임에 대해서, 본 펀드가 ACD를 면책하도록 정하고 있다.

6.2.3 ACD는 주식의 발행이나 재발행 또는 환매된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보관회사나 주주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다. ACD가 지급받을 보수는 제27장에 기재되어 있다

7. 보관회사

본 펀드의 보관회사는 The Royal Bank of Scotland plc로서 스코틀랜드에 설립된 공개유한회사(public limited company)이다. 관련규정에 따라, 보관회사는 의뢰받은 본 펀드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 펀드 주식의 거래/가격설정 및 본 펀드 수익의 분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펀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책임이 있다. 보관회사의 선임은 본 펀드, ACD 및 보관회사 간에 2004. 6. 19. 자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7.1 등기된 주사무소:

36 St Andrew Square, Edinburgh EH2 2YB.

7.2 주사무소:

Gogarburn, PO Box 1000, EH12 1HQ

7.3 최종 모회사:

로알뱅크오브스코틀랜드그룹피엘씨 (The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plc.)

7.4 주 사업목적:

보관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은 은행업이다.

7.5 계약기간:

7.5.1 보관회사는 본 펀드와 체결한 계약('보관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규정에 따라 보관회사는 보관계약에서 정한 보관회사로서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 보관회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5.2 보관계약은 본 펀드 또는 보관회사가 6개월의 사전 해지통보로써 해지할 수 있으나, 보관회사는 새로운 보관회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스스로 사임할 수 없다.

7.5.3 보관계약은 보관회사 또는 보관회사에 의하여 보관업무를 보조하도록 선임된 제3자가 예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서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펀드가 보관회사를 면책하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보관계약은 특정한 경우 보관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7.5.4 보관회사는 제29장 ‘보관회사의 보수, 수수료 및 비용’에 기재되어 있는 보수, 수수료 및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

7.5.5 보관회사는 본 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또는 권리증을 보관하는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The Northern Trust Company**를 선임하였다. **The Northern Trust Company**는 수탁인으로서 약정상 보관회사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보관회사는 보관회사를 보조하여 수익의 분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International Financial Data Services (UK) Limited**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8. 자산운용회사

ACD는 별첨 III.에 명기된 하위펀드별로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자산운용회사를 선임하였다. 자산운용회사는 본 펀드 및 ACD를 대신하여 항상 해당 하위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결정권한을 보유하며 그러한 자산의 보유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ACD는 자산운용회사가 본 펀드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며, 각각의 자산운용회사는 ACD와 각 자산운용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선임되었다.

8.1 엠앤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리미티드 (M&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8.1.1 본 자산운용회사의 주된 업무는 자산운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8.1.2 자산운용계약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ACD에 의하여 6개월의 사전 서면해지통지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

8.1.3 본 자산운용회사는 PLC UK의 계열사이며 ACD의 관계사이다.

8.2 프루덴셜에셋매니지먼트싱가포르리미티드 (Prudential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이하 “PAMS”)

8.2.1 본 자산운용회사의 주된 업무는 자산운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8.2.2 자산운용계약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ACD에 의하여 3개월의 사전 서면해지통지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



8.2.3 본 자산운용회사는 PLC UK의 계열사이며 ACD의 관계사이다.

9. 행정 및 명의개서 업무

ACD는 International Financial Data Services (UK) Limited(이하 "IFDS")로 하여금 본 펀드의 명의개서 업무와 행정 업무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

10. 감사

본 펀드의 감사는 PricewaterhouseCoopers LLP로서 그 주소는 PricewaterhouseCoopers LLP, Hays Galleria, 1 Hays Lane, London, SE1 2RD이다.

11. 주주명부

주주명부는 IFDS House, St Nicholas Lane, Basildon, Essex SS15 5FS에 주소를 두고 있는 IFDS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주주나 주주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는 주주명부를 업무시간 중에 열람할 수 있다.

12. 주식의 매입

12.1 주식의 매입절차

12.1.1 주식은 임의식 또는 적립식으로 투자될 수 있다.

12.1.2 ACD는 주식청약자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식청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CD는 청약자의 위험부담 하에 거부된 청약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ACD는 청약자가 지급금원(인지세도 포함)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수표 등 지급결제수단이 결제되지 않는 것도 포함)에는 기 승낙된 주식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12.1.3 주식 발행 후 남은 청약대금은 주식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신에 소액주가 발행될 수 있다. 소액주는 보통주의 1000분의 1에 해당된다.

12.2 국내투자자의 주식 매입절차



12.2.1 대한민국의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에 주식의 매입신청을 의뢰하고, 국내판매대행회사는 위와 같은 주식의 매입신청을 접수한 즉시 본 펀드의 아시아지역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한다. 이 때 적용되는 판매가격은 시차로 인하여 국내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입신청을 한 다음날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투자자는 매입신청에 따른 당해 매입대금 전액을 원화(또는 외화)로 납입해야 한다.

12.2.2 국내판매대행회사는 투자자의 매입신청서와 함께 수령한 원화(또는 외화)에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후 당해 주식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으로 환전하여 국내판매대행회사 명의의 외화계정에 예치한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국내판매대행회사가 고시하는 매매율을 기준으로 국내판매대행회사가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12.2.3 국내판매대행회사는 이와 같이 매입한 외화를 당해 주식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서 매입신청서가 접수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투자자가 납입한 매입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각 하위펀드의 주식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송금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각 주식의 기준가액 상승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로 하여금 추가대금을 즉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2.2.4 위와 같은 매입신청일로부터 주식대금 송금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객이 납부한 매입대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의 매입신청에 대하여 국내판매대행회사가 지체없이 처리한 경우에도, 국내외 간 시차 및 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매입주문일과 당해 외국에서의 매매성립일은 다를 수 있다.

12.2.5 이상의 주식매입 방법 및 결제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1영업일	• 고객의 매입신청 • 국내판매대행회사의 아시아지역판매회사에 대한 매입의뢰
제2영업일	• 아시아지역 판매회사의 국내판매대행회사에 대한 매입체결 통지 • 매입기준가 결정
제3영업일	• 매입대금 결제 및 주식취득

12.3 판매단위

12.3.1 하위펀드별 최초 매입금액은 임의식의 경우 EURO€ 2,4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이상으로 하며, 추가 매입금액은 EURO€ 4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이상의 거래단위로 매입할 수 있다. 적립식의 경우 펀드별 최초 매입금액은 EURO€ 4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이상으로 하며, 추가 매입금액은 EURO€ 4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와 같은 판매단위에도 불구하고 홍콩상하이



은행 서울지점은 동 최저판매단위 금액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2.3.2 임의식이나 적립식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의 최초 매입금액 및 추가 매입금액은 하위펀드별로 아래와 같다.

(단위: EURO€)

하위펀드	최소 청약금액 (최초매입 / 추가매입)	
	임의식	적립식
엠앤지 미국펀드	2,400 / 400	400 / 400
엠앤지 아시안펀드	2,400 / 400	400 / 400
엠앤지 유럽펀드	2,400 / 400	400 / 400
엠앤지 유럽중소형주펀드	2,400 / 400	400 / 400
엠앤지 글로벌베이지펀드	2,400 / 400	400 / 400
엠앤지 글로벌리더스펀드	2,400 / 400	400 / 400
엠앤지 일본펀드	2,400 / 400	400 / 400
엠앤지 범유럽펀드	2,400 / 400	400 / 400

13. 주식의 환매

13.1 주식의 환매절차

13.1.1 환매의 결과 주주가 해당 하위펀드의 최소 보유금액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 경우 주주는 전체 주식을 환매해야 한다)가 아닌 한, 주주는 ACD에게 특정한 거래일에 직접 환매하거나 또는 본 펀드가 환매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3.2.2 주식의 환매요청은 우편, 팩스, 텔렉스, 전화의 방법으로 직접 또는 허가된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CD는 전화나 전송 방식의 환매요청시 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3.2 국내투자자의 주식 환매절차

13.2.1 대한민국에서의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각 하위펀드의 주식의 환매를 신청하고, 국내판매대행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아시아지역 판매회사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13.2.2 이때 적용되는 환매가격은 시차로 인하여 국내투자자의 입장에서 환매신청을 한 다음날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국내판매대행회사는 환매가 실행되거나 이익분배금 등 과실을 수령한 경우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시아지역 판매회사는 적용 가능한



기준가격의 결정일 또는 환매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제7영업일 (국내외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국내판매대행회사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3.2.3 국내판매대행회사는, 국내판매대행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환매대금인 외화를 거래일 현재 국내판매대행회사의 매매율을 기준으로 국내판매대행회사가 정한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된 원화(또는 외화) 금액을, 투자자의 원화(또는 외화) 계좌로 이체한다.

13.2.4 투자자의 환매신청에 대하여 국내판매대행회사가 지체없이 처리한 경우에도, 국내외 간 시차 및 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환매신청일과 당해 외국에서의 매매성립일은 다를 수 있다.

13.2.5 이상의 주식매입 방법 및 결제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1영업일	• 고객의 환매신청 • 국내판매대행회사의 아시아지역판매회사에 대한 환매의뢰
제2영업일	• 아시아지역 판매회사의 국내판매대행회사에 대한 환매체결 통지 • 환매기준가 결정
제7영업일	• 환매대금 지급

13.3 환매단위

13.3.1 하위펀드별 최저 환매금액은 환매주문 전일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EURO € 75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이상으로 한다. 환매 후의 펀드잔고 금액은 환매주문 전일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EURO € 1,0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 환매주문을 해야 한다.

13.3.2 주식을 환매할 경우의 최저 환매금액 및 최소 보유금액은 하위펀드별로 아래와 같다.

(단위: EURO €)

하위펀드	최저 환매금액	최소 보유금액
엠앤지 미국펀드	75	1,000
엠앤지 아시안펀드	75	1,000
엠앤지 유럽펀드	75	1,000
엠앤지 유럽중소형주펀드	75	1,000
엠앤지 글로벌베이직펀드	75	1,000
엠앤지 글로벌리더스펀드	75	1,000
엠앤지 일본펀드	75	1,000
엠앤지 범유럽펀드	75	1,000



14. 주식의 전환

14.1 주식의 전환절차

14.1.1 어느 한 하위펀드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는 언제든지, 그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주식클래스 또는 하위펀드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구주”)를 당해 하위펀드의 다른 주식클래스 또는 본 펀드나 기타 M&G OEIC 의 다른 하위펀드의 주식(이하 “신주”)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주의 수는 구주가 환매되고 신주가 발행되는 때의 평가시점에 적용되는 신주와 구주 각각의 개별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본 펀드의 정관에 의할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 또는 매도할 신주의 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N = O \times (CP \times ER) / SP$$

- N: 발행 또는 매도될 신주의 수 (가장 근접한 소액주의 정수로 반올림함);
- O: 주주가 전환을 요구한 전환통지에 명시된 (또는 명시한 것으로 간주된) 구주의 수;
- CP: 경우에 따라서 취소 또는 판매에 적용되는 평가시점에 구주 1 주가 취소 또는 환매될 수 있는 가격;
- ER: 구주와 신주가 동일한 통화로 지정된 경우에는 1, 그 밖의 경우에는, 이사들의 전적인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환율(전환통지가 수령되거나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두 주식의 통화의 환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FSA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음). 이 경우 본 펀드는 본 펀드가 그러한 환전의 결과로서 요구되는 자산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기의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
- SP: 경우에 따라서 취소나 환매에 적용되는 평가시점에 신주 1 주가 발행되거나 매도되는 가격.

14.1.2 주식의 전환은 ACD 에 지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주주는 취소서를 작성(공유자의 경우에는 모든 공유자가 작성하여야 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4.1.3 ACD 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하위펀드 간의 주식 전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식클래스가 다른 통화로 발행되거나 다른 수수료 체계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하위펀드 간의 주식클래스의 전환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는 구주와 신주에 대한 해당 환매수수료 및 원수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14.1.4 전환의 결과 주주가 복수의 구주 또는 신주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러한 보유주식수가 해당 하위펀드의 최소 보유금액 이하인 경우, ACD 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전환신청인의 구주 전부를 신주로 전환하거나 구주의 전환을 거부할 수 있다. 주주의 환매 요청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매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전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환신청은 당해 하위펀드(들)의 거래일의 평가시점 또는 ACD 가 달리 정하는 날의 평가시점 이전까지 ACD 에 접수되어야 한다. 평가시점 이후에 접수된 전환신청은 해당 하위펀드(들)의 다음 거래일의 평가시점까지 보류된다.



14.1.5 ACD 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신주의 발행이나 매수 또는 구주의 환매나 소각과 관련된 수수료, 부담금 및 전환수수료 부분을 반영하여 신주의 주식수를 조정할 수 있다.

14.1.6 어느 한 하위펀드의 주식을 다른 하위펀드의 주식으로 전환한 주주는 법률상 그러한 주식전환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없다.

14.1.7 어느 한 하위펀드 내 주식클래스의 주식을 본 펀드가 아닌 다른 M&G OEIC 의 주식 또는 ACD 가 인가를 받아 운용하는 다른 예탁기구의 주식(또는 구좌, unit)으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조건 및 현행 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ACD 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14.2 국내투자자의 주식 전환절차

14.2.1 대한민국에서의 투자자는 국내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주식의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내판매대행회사는 투자자의 주식전환 신청을 즉시 아시아지역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아시아지역 판매회사는 외국자산 운용회사에 해당 주식의 전환을 주문한다.

14.2.2 전환청구는 각 하위펀드의 주식의 거래일에 처리된다. 대한민국에서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본 펀드의 하위펀드 중 대한민국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신고가 수리된 하위펀드 (M&G(1) 및 M&G(3)의 하위펀드)로의 전환신청만이 가능하다.

14.2.3 전환주문 및 이에 관한 대금결제절차는 상기 환매절차 및 매입절차에 준하여 처리된다.

14.3 전환단위

전환의 경우에는 전환 전 펀드의 잔고가 전환청구 전일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EURO €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전환하고자 하는 펀드가 최초 매입인 경우에는 EURO € 1,000 이상을, 추가 매입인 경우에는 EURO € 75 이상을 전환신청할 수 있다.

15. 기타 거래 정보

15.1 거래유발수수료 (Dilution)

15.1.1 관련규정 및 본 펀드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각 하위펀드의 투자물의 가치산출 방식은 제21장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펀드가 실제로 투자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중개수수료, 세금 및 기초투자자산의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이 등 거래비용으로 인해, 하위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간시장가격과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거래비용은 하위펀드의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 소위 희석화(dilution)를 가져올 수



있다. 관련규정은 이러한 회석화로 인한 비용을 하위펀드의 자산으로부터 직접 지출하거나 거래가의 회석화 조정 방식으로 하위펀드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시 투자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ACD도 이러한 방침을 채택하였다. ACD는 이러한 회석화 조정을 행함에 있어서 신공동투자기구규정집 (COLL) 6.3.8.을 준수하여야 한다. ACD의 방침은 하위펀드에 대한 회석화의 충격 내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이다.

15.1.2 각 하위펀드의 회석화 조정은 거래가격차, 수수료 및 거래세를 포함하여 당해 하위펀드의 기초 투자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예상비용을 참조하여 산출된다. 회석화 조정을 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주식의 환매금액(소각시)에 대한 판매금액(발행시)의 비율에 따른다. ACD는, 어떠한 주식의 판매 및 환매가 현 주주(판매와 관련하여)나 잔존주주(환매와 관련하여)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고 회석화 조정을 적용하는 것이 모든 주주 및 잠재적인 주주들에게 공정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주식의 판매 및 환매에 대하여 회석화 조정을 행할 수 있다. 회석화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물이전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새로이 포트폴리오에 유입되는 자산은 본 펀드의 가격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즉, 청약가격에 명목상의 거래수수료를 가감하는 방식) 평가된다. 회석화 조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하위펀드 자산에 회석화가 이루어져 향후 당해 하위펀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15.1.3 ACD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주주에게 통지하고 본 투자설명서를 변경함으로써, 현행의 회석화 조정 방침을 변경할 수 있다.

15.1.4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CD는 대부분의 영업일에 회석화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회석화 조정은 통상 아래 표에 기재된 바에 따를 것이다. ACD는 가격을 더 낮은 금액으로 조정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오직 회석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달리 ACD나 ACD의 관계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회석화는 금원의 유출입과 투자물의 매매에 관련된 것이므로 회석화가 발생할 것인지, 언제 발생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석화 조정표

아래 하위펀드별로 대략 적용되는 회석화 조정률은 아래와 같다.

엠앤지 미국펀드	+0.16% / -0.16%
엠앤지 아시안펀드	+0.38% / -0.47%
엠앤지 유럽펀드	+0.22% / -0.22%
엠앤지 유럽중소형주펀드	+0.32% / -0.23%
엠앤지 글로벌베이직펀드	+0.31% / -0.21%
엠앤지 글로벌리더스펀드	+0.22% / -0.21%
엠앤지 일본펀드	+0.15% / -0.15%



(+)의 희석화 조정 수치는 하위펀드의 판매액이 순증할 경우 (판매액이 환매액을 초과할 경우) 평균가격으로부터 증가되는 수치를 의미한다. (-)의 희석화 수치는 하위펀드의 환매액이 순증할 경우 (환매액이 판매액을 초과할 경우) 평균가격으로부터 감소하는 수치를 의미한다. 위 수치는 2008. 6. 30. 이전의 12개월 간 해당 하위펀드의 기초투자물에 대하여 발생한 거래비용(거래가격차, 수수료 및 거래세 등)에 근거하여 산출되었다.

15.2 현물출자에 의한 발행 및 환매

ACD는, 자신의 전적인 재량으로, 자산운용회사 및 보관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조건에 따라 현물을 본 펀드에 이전하거나 본 펀드로부터 이전받음으로써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발행 또는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환매의 경우 ACD는 환매대금의 지급일 이전에 주주에게 출자된 현물의 인도 취지를 통지하고 주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당해 현물의 매도로 인한 매각대금을 인수할 것인지를 문의하여야 한다. ACD는, 일정한 조건 하에 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하여, 출자된 현물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본 펀드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주주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

15.3 고객계좌

일정한 경우 고객계좌에 현금이 예치될 수 있다. 잔고에 대하여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16. 인지세 ("SDRT")

16.1 영국재정법률에 따르면, ACD에 의하여 환매되거나 기타 일정한 거래의 대상이 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0.5%의 인지세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영국재정법률은 이러한 거래를 "surrenders" 라고 칭한다. 인지세 납부액은 당해 주와 그 다음 주 동안의 주식의 판매 및 환매대금에 의하여 산출된다. 관련 기간동안 해당 주식클래스 주식이 발행된 수보다 surrenders된 주식수가 많은 경우 또는 당해 하위펀드가 인지세 면제 대상 목적물(즉 영국 증권 이외의 목적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액이 감액될 수 있다. 하위펀드가 일정 기간동안 주식을 발행하지 않거나 인지세 면제 대상 목적물에 전부 투자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16.2 이러한 인지세는 당해 하위펀드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관련규정은 인지세를 하위펀드의 자산에서 직접 부담케 하거나, 사후에 신규투자자로부터 신규투자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로부터 탈퇴수수료를 받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ACD는 인지세를 본 펀드의 자산에서 직접 납부하고, 인지세를 발생시킨 주식클래스의 surrenders가 이루어진 하위펀드에 그 비용을 할당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 ACD는 이와 같이 하위펀드의 자산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이고 하위펀드의 실적에도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16.3 매입하거나 환매하는 주주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거래유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아 산출되는 가격의 소수점 넷째자리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세 비용은 해당 주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그러한 납부금액은 보관회사에 지급되어 해당 하위펀드의 자산에 포함된다.

양도된 주식의 시장가격에 인지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ACD가 결정한 금액이 납부될 때까지 본 펀드는 주식의 양도에 관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1999년 재정법 제19장(Schedule 19 of the Finance Act 1999)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주식 이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7. 거래의 제한

ACD는 어느 국가의 법률 (또는 법원 등에 의한 그러한 법률의 해석)을 위반한 자가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한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CD는 특히 주식의 발행, 판매, 환매, 취소, 전환 신청을 거부하거나 또는 주식의 적법한 보유자에게 당해 보유 주식의 강제 환매 또는 양도를 요구할 수 있다.

영국 외 국가의 국민 또는 이러한 사람들을 수익자로 하는 자산관리자, 수탁자, 명의인은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와 주식의 권유시 그러한 주주는 스스로 해당 국가의 관련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주주들은 관련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정부 및 외환당국 등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련 국가의 법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주주의 책임이며 본 펀드는 주주들의 주식 취득, 양도 및 세금납부 등과 관련하여 완전히 면책된다.

관련주식이 동 펀드 내에서 변제할 수 없거나,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나(해당 국가에서 유사한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주주가 관련주식을 보유할 자격이 없는 경우로 인하여 세금 또는 어떠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또는 만약 다른 주식에 비슷한 상황에서 보유되어 진다면) 어느 국가의 법령 또는 관련규정(또는 법원 등에 의한 그러한 법률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또는 유리한 목적으로 위반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을 ACD가 통보받게 되면, ACD는 주주에게 해당 주식을 적격한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받은 주주가 30일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또는 ACD에 환매를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제출하거나 해당 주식의 보유가 적격하다고 ACD가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30일이 경과되면 관련규정에 의해 모든 해당 주식을 서면으로 환매 또는 취소(ACD의 재량에 따라) 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곧 보유 예정임을 알고 있는 주주는 위에 서술된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해당 주식을 적격한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ACD에 환매를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별도로 상기 ACD로부터 요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식의 환매를 요구하는 서면 요청이 있거나 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면 관련법규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처리된다.

18. 본 펀드의 거래 정지

18.1 ACD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주주의 이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관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하위펀드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주식클래스 또는 주식의 발행, 판매, 취소 및 환매를 최대 28일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보관회사가 위와 같은 필요를 이유로 거래정지를 요구할 경우 ACD는 반드시 위와 같은 거래를 정지하여야 한다.

18.2 주식의 매도 및 매입을 위한 주식가격의 재산출은 그러한 거래 정지가 종료한 날의 첫번째 평가시점에 이루어진다.

19. 준거법

주식에 대한 모든 거래는 영국법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된다.

20. 본 펀드 가격의 평가

20.1 본 펀드의 어느 특정 주식클래스 주식의 가격은 당해 주식클래스에 관련된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그러한 주식클래스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반영하여 조정된다.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현재 각 거래일의 영국시간 12시(정오)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20.2 ACD는 거래일 중 언제라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21. 순자산가치의 산출

21.1 본 펀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하위펀드의 예탁자산 가치는 예탁자산으로부터 아래 항에 따라 산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1.2 아래 조항에 따라, 본 펀드(또는 하위펀드)의 모든 예탁자산(미수채권 포함)은 자산가치를 산출할 때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3 현금이 아닌 자산 또는 우발채무 거래는 아래와 같이 평가되며 평가기준이 되는 가격은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의 것으로 한다:

21.3.1 공동투자기구의 구좌 또는 주식의 경우:

21.3.1.1 단일의 매수 및 매도 가격이 호가되었을 때, 가장 최근에 호가된 가격; 또는

21.3.1.2 복수의 매수 및 매도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들의 평균가격. (단, 매수가격에서 선취수수료(매매수수료)가 차감되고 매도가격에서 후취수수료 등이 공제된 것을 전제로 한다); 또는

21.3.1.3 ACD가 판단했을 때 위와 같이 산출된 가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또는 최근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ACD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가격;

21.3.2 기타 양도성 유가증권의 경우:

21.3.2.1 단일한 매수 및 매도 가격이 호가된 경우, 그 가격; 또는

21.3.2.2 복수의 매수 및 매도 가격이 호가되면 그 가격들의 평균가격; 또는

21.3.2.3 ACD가 판단했을 때, 위와 같이 산출된 가격을 신뢰할 수 없거나, 최근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ACD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가격;

21.3.3 위 제21.3.1항 또는 제21.3.2항 외의 자산의 경우: ACD가 판단했을 때,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간시장가격.

21.4 현금, 보통예금 또는 정기예금과 같은 예탁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및 기타 장기 예탁은 보통 액면가격에 의해 산정된다.

21.5 우발채무 거래 자산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21.5.1 매도한 옵션의 경우, (그리고 그러한 옵션을 매도한 대가로서 인수한 프리미엄이 예탁자산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미수 프리미엄의 순가치를 차감된다. 자산이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인 경우, 가치의 평가 방식은 ACD와 보관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21.5.2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선물 상품인 경우, 그 자산은 ACD와 보관회사 사이에 합의된 평가 방식에 따라 청산시 순자산 가치에 포함된다.

21.5.3 그 외의 우발채무 거래인 경우, (+) 또는 (-)인 경우를 불문하고 청산시 순 증거금 가치로서



포함된다. 자산이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인 경우, ACD와 보관회사가 합의하여 정한 평가방식에 따라 포함된다.

- 21.6 예탁자산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취소하라는 지시사항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된 것(및 그에 따라 현금이 지급 또는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 21.7 아래의 제21.8 항 및 제21.9항에 따라, 기존에 체결되었지만 이행되지 아니한 자산의 무조건부 매도 및 매수에 관한 계약은 이행되었고 관련된 모든 후속적인 조치들이 취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무조건부 계약이 자산평가 직전에 체결되었고 ACD가 판단했을 때 그러한 자산을 누락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순자산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21.8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고 만기도 도래하지 아니한 선물 또는 계약 및 행사되지 아니한 매도 또는 매수 옵션은 위 제21.7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21.9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모든 계약서들은 제21.7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 21.10 당시에 예상된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의 예상치는 차감된다.
- 21.11 예탁자산으로부터 지급될 부채 및 이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가산되는 세금의 예상치는 차감된다.
- 21.12 상환일자를 불문한 대출 원금 및 이에 대한 미지급 발생이자는 차감된다.
- 21.13 그 근거를 불문하고 본 펀드가 환수받을 수 있는 세금의 예상금액은 가산된다.
- 21.14 예탁자산에게 지급되거나 기한이 도래한 모든 채권의 금액은 가산된다.
- 21.15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자 또는 수익의 금액은 가산된다.
- 21.16 ACD가 판단하였을 때, 순자산가치가 가장 최근의 정보에 기초하고 모든 주주들에게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산정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정 금액은, 적절하게 차감 또는 가산된다.
- 21.17 파운드화 이외의 외국환 또는 외국환의 가치는 해당 평가시점에 주주 또는 잠재적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준의 환율로 환전된다.

22. 각 하위펀드 및 주식클래스 별 주당 가격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하는 가격은 각 하위펀드 내에서 거래유발수수료가 반영되었고 선취수수료를 가산하지 않은 상태의 주당 순자산가치의 합계이다.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가격은 후취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주당 순자산가치이다. 또한 이러한 매입 및 매도시에는 15장 및 16장에 규정된 거래유발수수료 및 인지세가 가산될 수 있다.

23. 가격결정원칙

본 펀드는 미래가격원칙(forward pricing basis)을 취한다. 즉 매입이나 매도 합의 후 그 다음의 평가시점에 산출된 가격으로 정한다.

24. 가격의 공시

가장 최근의 유로화 주식클래스의 주식가격은 자산운용회사의 웹사이트인 www.mandg.co.uk 및 아시아지역 판매회사의 웹사이트인 www.prudentialunittrusts.com에 공시되며, 국내투자자를 위한 가장 최근의 유로화 주식클래스의 가격은 판매대행회사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영업점 및 웹사이트인 www.kr.hsbc.com 및 국내대리인의 웹사이트인 www.pcaasset.co.kr에 공시된다.

25. 위험요소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위험요소를 본 펀드에 대한 투자 이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25.1 일반사항

본 펀드에 대한 투자는 정상적인 시장상황의 변동성 및 기타 유가증권 투자 본연의 위험요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과거의 실적이 반드시 미래 실적에 대한 지표가 될 수는 없다. 투자가치의 상승이나 각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달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가치 및 그로 인한 수익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자는 본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25.2 특수(Specialist) 하위펀드

특수(Specialist) 펀드(예컨대 특정지역 또는 특정자산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펀드의 해당 주식가격 변동폭이 평균적인 변동폭보다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수 하위펀드는 다음과 같다:

- 엠앤지 아시안펀드 (M&G Asian Fund)



- 엠앤지 유럽중소형주펀드 (M&G European Smaller Companies Fund)
- 엠앤지 일본펀드 (M&G Japan Fund)

25.3 선취수수료의 영향

선취수수료가 부과된 경우, 해당 주식을 단기간 내에 환매한 주주는 (설령 해당 주식의 가치하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원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펀드에 대한 주식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25.4 주식의 거래 정지

투자자들은 경우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환매할 권리가 정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25.5 환율

하위펀드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통화와 다른 통화로 주식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경우,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ACD는 해당 주식을 매입 또는 환매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제외하고는 특정 주식클래스에 대하여 환율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5.6 자본에 대한 비용의 공제 (Charges to Capital)

하위펀드의 투자목적이 배당수익의 창출로서 자본의 증식 목적과 동등하거나 이에 우선하는 경우, ACD의 보수 및 기타 수수료를 비롯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배당수익이 아닌 자본에 부과되어 공제됨으로써 자본의 증식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엠앤지 범유럽펀드 (M&G Pan European Fund) 및 엠앤지 글로벌리더스펀드 (M&G Global Leaders Fund)가 있다.

25.7 본 펀드의 부채

25.7.1 각 하위펀드에게 귀속되는 책임, 비용, 수수료 등은 가급적 그 해당 하위펀드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펀드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ACD는 주주 및 본 펀드 전반에 공정한 방식으로 자산, 부채, 비용 또는 수수료를 하위펀드 간에 분배할 수 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ACD는 관련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그 비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재분배한다. 이러한 재분배시 ACD는 차기 연간 또는 반기 보고서를 통해 주주에게 이러한 재분배의 사실을 공지한다.

25.7.2 그러나 주주는 본 펀드의 부채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주주는 주식 대금을 완납한 이상 본 펀드에 추가적인 납입을 할 의무가 없다.



25.8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올라감에 따라 동등한 투자금액에 대한 실제 이익가치가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5.9 조세

공동투자기구의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현행의 조세제도는 보장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변동될 수 있다.

25.10 취소권

취소권이 행사될 경우, 만약 당해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인지하기 전에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원금이 회수되지 못할 수도 있다.

26. 보수 및 비용

26.1 일반사항

26.1.1 본 펀드의 설립, 등록, 인가, 주식의 공모, 투자설명서의 준비/인쇄 및 본 펀드의 전문 자문역에 대한 보수 등 관련 보수, 비용은 ACD가 부담한다.

26.1.2 본 투자설명서가 대체된 이후에 설립된 하위펀드 또는 주식클래스의 직접적인 설립비용은 관련 하위펀드 또는 ACD의 재량에 따라 ACD가 부담된다.

26.1.3 본 펀드는 본 펀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을 본 펀드의 자산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아래와 같다:

26.1.3.1 ACD 및 자산운용회사에게 지급할 보수 및 비용과, ACD가 지급하지 않은 한도에서 자산운용회사의 보수;

26.1.3.2 하위펀드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명세서, 확인서 및 차액 설명서에서 나타나는 금액으로서 중개인의 수수료, 재정 비용 (인지 및 인지세를 포함) 기타 다른 지출금 중 통상 적정한 금액.

26.1.3.3 본 펀드의 법률자문 기타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 비용 기타 지출사항;

26.1.3.4 주주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ACD 또는 ACD의 관련자가 소집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6.1.3.5 관련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식 발행의 대가로 하위펀드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비롯하여 분할, 합병 기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26.1.3.6 대출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 및 대출의 발생, 해제 또는 대출조건의 협의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26.1.3.7 인지세를 비롯하여 하위펀드 자산 또는 주식의 판매 또는 환매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금 및 부담금;

26.1.3.8 감사의 감사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및 감사의 비용;

26.1.3.9 FSA의 수수료 및 본 펀드의 주식에 판매되거나 판매될 국가 또는 지역의 감독기관의 이에 상응하는 정기적인 수수료;

26.1.3.10 보관회사가 제 29.2 장에 해당하는 활동 및 의무이행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비용;

26.1.3.11 FSA 관련규정에 의하여 달리 지출이 요구되는 기타 비용 및

26.1.3.12 본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수수료 또는 비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기타 관련 세금.

26.1.4 비용은 관련규정에 따라 자본과 수익 사이에 분배된다.

26.1.5 상황에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3자에게 지불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커미션 중 일부를 그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커미션 분배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브로커는 리서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커미션 (일반적으로 거래 당 60~70%)과 관련한 합의에 동의한다. 이는 리서치 제공자가 자산운용사를 위해 제공한 리서치 서비스에 대해 커미션의 일부(30~40%)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7. ACD의 수수료

27.1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로서 ACD는 각 하위펀드의 각 주식클래스로부터 연간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 경우 연간 수수료는 별첨 III.에 기재된 수수료를 및 중간시장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각 주식클래스에 귀속하는 각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에 기여하는 연간 비율에 의한다.

27.2 연간수수료는 매일 발생하며, 2주 기준으로 선불된다. 각 하위펀드 및 주식클래스의 현행 수수료는 별첨



III.에 기재되어 있다.

- 27.3 하위펀드가 ACD 또는 ACD의 관계사(모회사의 지배를 동일하게 받는 경우 또는 자본이나 의결권의 10%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공동투자기구의 구좌 또는 주식에 투자될 때, ACD는 투자되는 펀드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간보수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투자되는 펀드는 매입 또는 환매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류할 수 있다.
- 27.4 ACD는 주식거래에 따른 인지 및 인지세를 포함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이며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모든 실비에 대하여 보상받는다.
- 27.5 하위펀드의 투자목적상 수익(배당)의 발생이 자본의 증가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한 경우인 경우에는, ACD의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보관회사의 동의 하에 수익 대신 자본으로부터 차감할 수 있다. 이러한 ACD의 수수료에 대한 취급방식은 주주에게 배당될 수 있는 수익을 증가시키지만 자본의 증식을 저해할 수 있다. 엠앤지 범유럽펀드(M&G Pan European Fund)와 엠앤지 글로벌리더스펀드(M&G Global Leaders Fund)를 제외하고는, ACD와 보관회사는 각 하위펀드의 수익으로부터 ACD의 수수료를 차감하기로 합의하였다.
- 27.6 만약 어느 특정 기간의 주식클래스의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ACD는 해당 주식클래스에게 귀속될 자본 자산으로부터 그 초과분을 차감할 수 있다.
- 27.7 ACD는 관련규정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 항목을 신설하거나, 본 펀드의 예탁자산에서 차감될 수 있는 비용으로서 현행 보상을 내지 그 금액을 또는 선취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ACD는 즉시 그러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27.8 ACD는 본 펀드에 대하여 관리인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 별첨 III. 에 기재된 수수료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27.8.1 주식의 공모, 본 투자설명서(또는 투자설명서의 개정판)의 준비 및 인쇄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이러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문가 비용;
- 27.8.2 주주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비용;
- 27.8.3 본 펀드 주식의 거래소에서의 상장 및 주식의 발행, 전환 또는 취소와 관련한 비용;
- 27.8.4 주식 가격의 주요 일간지 기타 신문매체에의 공고와 관련하여 본 펀드에 발생하는 비용;
- 27.8.5 본 펀드가 지출한 비용내역 또는 연간 및 반기 보고서의 작성 및 발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27.8.6 본 펀드 또는 ACD와 관련한 보험의 가입 및 유지 비용;

27.8.7 주주의 소집요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주주총회의 소집과 관련된 비용;

27.8.8 의사록 기타 본 펀드가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서류의 준비 등 행정적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27.8.9 본 항에서 열거한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타 유사한 세금.

28. 자산운용회사의 보수

자산운용회사의 보수 및 비용(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은 ACD위임계약서에 따른 보수율에 따라 ACD가 이를 지급한다.

29. 보관회사의 보수, 수수료 및 비용

29.1 보관회사의 보수는 ACD의 정기적인 수수료 지급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해당 하위펀드의 자산평가를 거쳐 해당 하위펀드의 자산으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는다. 그러한 정기적인 보수는 ACD와 보관회사 사이에 합의된다. 각 하위펀드에 대한 보관회사의 보수는 아래와 같이 누적적으로 산출된다.

- 예탁자산의 ₩150,000,000까지에 대하여 0.0075%
- 예탁자산의 ₩500,000,000까지에 대하여 0.005%
- 예탁자산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0.0025%

이러한 보수율은 관련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29.2 보관회사는 아래의 각 항목들(이를 포함하나 이에만 한정하지 아니함)과 관련하여 일반 법률, 관련규정, 보관계약이 정한 업무의 수행, 그러한 업무의 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각 하위펀드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i)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ii) 주주에 대한 배당, 이자 및 기타 수입의 분배 및 징구;
- (iii) 분배계좌의 유지;
- (iv) 외국환의 전환;
- (v) 보관회사 또는 그 수탁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인한 자산의 등록;
- (vi) 차입, 대주거래 또는 기타 허용되는 거래;
- (vii) 당사자와의 교신 (텔레ックス, 전송, SWIFT, 전자메일 포함)
- (viii) 세금관계;
- (ix) 보험관계;



- (x) 은행 및 은행거래와 관련한 비용;
- (xi) 보관회사의 연간보고서의 준비;
- (xii) 전문가 자문의 입수;
- (xiii) 법률절차의 진행;
- (xiv) 주주총회의 소집 및/또는 참석; 및
- (xv) 정관, 투자설명서의 수정 및 보관계약 및 기타 보관회사 및 그의 수임인이 체결하는 계약의 협의 및/또는 수정.
- (xvi) 보관회사 또는 수탁인에 대한 주식의 이전;
- (xviii) 자산의 수탁;
- (xix) 파생 거래;
- (xx) 수익 및 자본의 추심;
- (xxi) 신주인수권의 분배 관리;

보관회사는 관련 계약 기타 거래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때,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 또는 달리 보관회사와 본 펀드 또는 ACD 사이에서 합의로 정한 때에 자신의 보수,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받는다.

29.3 보관회사는 Northern Trust Company를 본 펀드의 자산에 대한 수탁인으로서 선임하였고, 이러한 수탁인에 대한 보수로 지급한 비용을 본 펀드의 비용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다. 거래수수료는 해당 주식의 가치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며, 현재 거래수수료가 부과되는 지역의 현행 수수료 수준은 £4 내지 £80의 범위이다. 이러한 거래수수료는 거래가 효력을 발생할 경우 부과되며, 그러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월말일 또는 보관회사와 ACD가 별도로 합의한 특정일 이전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보관수수료 또한 해당 주식의 가치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며, 현재 보관수수료가 부과되는 지역의 현행 수수료 수준은 해당 펀드 자산가치의 연 0.001% 내지 0.30%의 범위이다. 보관수수료는 ACD와 보관회사가 수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발생하여 지급된다.

29.4 본 펀드의 청산, 하위펀드의 소멸 또는 주식클래스의 환매시 보관회사는 그러한 청산, 소멸 또는 환매일까지의 안분된 보수, 수수료 및 비용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관회사와의 계약에서는 보관회사의 업무상실로 인한 여타의 보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보관회사에 지급할 보수, 수수료 또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에 추가되어 지급된다.

29.5 특정 하위펀드에 직접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하위펀드 사이에 안분된다.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회사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그러한 업무를 수행한 자 (ACD 또는 보관회사 또는 ACD의 관계사 또는 수탁인을 포함)에 의하여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위펀드 별로 안분된다.

29.6 본 펀드는 아래의 각 비용을 각 하위펀드의 자산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다;

29.6.1 보관회사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부과되는 보수 및 그에 의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



29.6.2 수익의 취득 및 분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및 비용

29.6.3 보관회사가 주주를 위한 연간보고서의 준비를 위하여 소요한 모든 수수료 및 비용

29.6.4 대주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및 비용

29.7 현행 영국 관세법에 의하여, 보관회사의 보수, 수탁인의 보수 및 위 비용에 추가하여 해당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가산될 수 있다;

30. 하위펀드간 보수 및 비용의 분담

ACD가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의 모든 보수, 부담 및 수수료는 그 발생 원인이 된 하위펀드가 부담하며, 어느 한 하위펀드에 귀속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비용은 ACD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주주에게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분담되지만, 통상적으로는 해당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비율에 따라 안분된다.

31. 주주총회 및 의결권

31.1 정기주주총회

2005년 개방형투자회사규정(개정본)에 의하여 본 펀드는 연간 정기주주총회의 개최를 중지한다.

31.2 주주총회의 소집

31.2.1 ACD 또는 보관회사는 언제라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1.2.2 주주는 본 펀드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의 소집 요구서는 요구 당시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서명하고 회의안건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 펀드의 주사무소에 비치되어야 한다. ACD는 소집 요구서를 수령한 후 8주 이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1.3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정족수

주주는 최소 14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는다. (다만, 휴회 중 재개될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모든 주식은 정족수에 포함되며, 주주는 총회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사 정족수는 직접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참석하는 주주 2인 이상이다. 휴회 중 재개될 경우의 의사 정족수는 직접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참석하는 주주 1인 이상이다. 주주총회의 개최 또는 재개의



통지는 주주의 등록된 주소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31.4 의결권

31.4.1 주주총회시 개인주주의 경우 해당 주주가,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권한 있는 대표를 통하여 각자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31.4.2 투표시 주주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주식에 따른 의결권은 소집통지가 도달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7일 전을 기준으로 총발행주식의 가치에 대한 해당 주식의 가치에 비례하는 의결권을 보유한다.

31.4.3 주주는 해당 주식 모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고, 통일해서 행사할 필요도 없다.

31.4.4 관련규정이나 정관에 의하여 특별결의사항(의결권의 75% 이상의 가결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진다.

31.4.5 ACD는 의사정족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ACD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특별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ACD가 다른 등록된 주주와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한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1.4.6 제31장의 '주주'는 소집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기준으로 주주인 자를 포함하나, 주주총회 당시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ACD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31.4.7 엠앤지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노미니즈리미티드를 통해 유로화 클래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엠앤지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의 재량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의받을 수 있다.

31.5 주식클래스 및 하위펀드 주주총회

주주총회에 대한 위 조항들은,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클래스 및 하위펀드 주주총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1.6 주식클래스 주주의 의결권의 변동

주식클래스 및 하위펀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해당 주식클래스 또는 하위펀드의 주주들의 특별결의 (75%)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



32. 과세

32.1 일반사항

아래의 사항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투자자는 각자 해당 국가의 법제에 따라 주식의 매입, 보유, 전환, 환매 기타 처분과 관련된 과세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32.2 본 펀드에 대한 과세

32.2.1 이자 및 배당 소득

32.2.1.1 주식형펀드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 각 하위펀드는 비용을 공제한 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 중 가장 낮은 최소 세율 (현행 20%)을 적용하여 과세될 수 있다.
- 과세표준 대상소득:
 - 은행이자
 -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정산된 외국에서의 배당
 - 영국회사로부터의 배당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단, 일부 주식배당의 경우 현금배당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펀드는 위와 같은 과세대상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할 수 있는데, 그러한 비용 중 주요한 것으로는 연간 자산운용 보수, 보관비용, 명의개서비용 등이 있다.

32.2.1.2 채권형펀드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 국내에 판매신고된 채권형펀드 클래스의 경우 발생수익에 대해 영국 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기준가를 산출하며 영국거주자가 아닌 투자자에게만 판매된다.

32.2.2 양도소득 (투자유가증권의 양도소득, Capital gains)

하위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영국 양도소득세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32.3 주주에 대한 과세

32.3.1 이자 및 배당 소득



하위펀드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경우, 비거주자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영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금환급(tax credit)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영국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비거주자가 영국 소득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영국과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국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위펀드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환급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투자자는, 영국 이중과세방지조약에 근거하여, 영국 투자자들에 인정되는 세금환급금의 일부를 현금지급할 것을 영국 국세 및 관세청(HM Revenue and Customs)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영(0)이거나 또는 현재 10%인 기본환급액의 작은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

32.3.2 양도소득 (Capital gains)

영국의 거주자도 아니고 영국의 통상 거주자도 아닌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하위펀드 주식의 처분 또는 처분간주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국의 양도소득세 납부무역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1) 투자자가 영국 내에서 수행하는 영업, 전문업 또는 직업과 관련하여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위와 같은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또는 (2) 투자자가 일시적인 비거주 상태에 관한 반회피조항(anti-avoidance)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2.4 국내투자자와 관련한 과세

거주자 또는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갖는 비거주자가 받은 본 펀드 주식의 환매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 포함하여 15.4%)가 과세된다. 다만, 국내펀드의 경우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 등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반면 본 펀드와 같은 역외펀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33. 수익균등화

33.1 본 펀드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수익균등화가 적용된다

33.2 주식 매수가격의 일부는 본 펀드가 수령하거나 수령할 발생소득의 해당 부분을 반영한다. 이 금액은 당해 회계기간 동안 발행된 주식에 대한 최초의 소득할당과 더불어 주주에게 반환된다.

33.3 수익균등화 금액은, 연간 회계기간 또는 중간 회계기간 동안 주주에게 발행되거나 매각된 주식가격에 포함된 총소득액을 발행 또는 매각된 주식의 총수로 나눈 후 그 산출평균을 해당 주식에 반영하여 산출한다.



34.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의 청산

- 34.1 1986년 영국파산법 제5장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비등기 법인으로 청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펀드는 청산되지 아니한다. 하위펀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산될 수 있을 뿐이다.
- 34.2 관련규정에 따라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가 청산될 경우 그러한 청산절차는 FSA의 승인을 얻은 후에라야 개시된다. ACD는 본 펀드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본 펀드가 12개월 이내 본 펀드의 모두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서면을 FSA에 제출하여야만 FSA로부터 청산에 관한 승인을 득할 수 있다.
- 34.3 아래의 각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는 청산될 수 있다:
- 34.3.1 청산에 관한 주주들의 특별결의;
- 34.3.2 정관에 의해 본 펀드 또는 어느 한 하위펀드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청산사유로 규정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 (예를 들면, 본 펀드의 납입자본이 최소한도 이하가 되는 경우 또는 하위펀드의 경우 순자산가치가 £10,000,000 이하인 경우 또는 어느 한 국가의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하위펀드를 청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ACD가 판단한 경우; 또는
- 34.3.3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에 관한 ACD의 인가취소 요청을 FSA가 승인하고 그 관련 문서에 기재된 발효일이 도래하는 경우.
- 34.4 위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4.4.1 거래, 가격결정 및 가격, 투자 및 차입에 관한 관련규정 제6.2항, 제6.3항 및 제5항은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에 대하여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34.4.2 본 펀드는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의 주식의 발행 또는 취소를 중지하고, ACD는 주식을 판매 또는 환매를 하거나 본 펀드로 하여금 판매 또는 환매를 하도록 조치하는 업무를 중지한다;
- 34.4.3 ACD의 허가 없이 주식 이전을 위한 명의개서나 주주명부의 변경 업무가 중지된다;
- 34.4.4 본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본 펀드의 청산을 위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를 중지한다.
- 34.4.5 본 펀드의 법인격 및 권한과 위 제34.4.1항 및 제34.4.2항에 따른 ACD의 권한은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유지된다.



- 34.5 ACD는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가 청산할 경우 즉시 자산을 처분하여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의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을 위한 총당금을 확보하며 보관회사로 하여금 주주가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의 예탁자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의 비율에 따라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CD가 예탁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본 펀드 및 하위펀드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ACD는 보관회사로 하여금 잔고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주주에게 발송된 날 (또는 그 이전에) 주주의 주식보유율에 따른 최종적인 안분배당을 행하도록 조치한다.
- 34.6 본 펀드의 청산사무 종결시 본 펀드는 확정적으로 청산하며, 당시 본 펀드에게 잔존하는 자산(청구되지 않는 배당금을 포함)은 청산사무 종결 후 한달 이내에 법원에 지급된다.
- 34.7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후, ACD는 법인등기소에 서면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FSA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 34.8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의 청산사무 종결 이후, ACD는 청산절차의 경과 및 예탁자산의 배당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 펀드의 감사는 최종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이러한 최종보고서 및 감사의견서는 청산사무 종결 후 2달 이내에 FSA, 각 주주 및 (본 펀드가 청산할 경우에는) 법인등기소에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 34.9 본 펀드는 엄브렐라형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하위펀드와 관련된 채무는 일단 예탁자산으로부터 변제되며 해당 하위펀드에게 할당된다.
- 34.10 어느 하위펀드에 귀속된 예탁자산의 처분대금으로 해당 하위펀드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은 다른 하위펀드 중 할당된 예탁자산의 처분대금으로 채무를 지급하고도 남은 하위펀드들의 예탁자산에서, 주주에게 공정한 안분 방식에 의하여 지급된다.

35. 일반사항

35.1 회계연도

본 펀드의 회계연도는 매년 8. 31.에 종료한다. 중간회계연도는 매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35.2 수익분배

35.2.1 수익분배는 매 회계연도의 배당가능 수익 및 일정 하위펀드의 경우 중간회계연도의 배당가능 수익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35.2.2 각 하위펀드의 수익분배는 별첨 III.에 언급된 수익분배일 또는 이전에 지급한다.



35.2.3 지급될 수 있는 배당이 6년간 청구되지 않으면 배당청구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펀드에 귀속한다.

35.2.4 어느 한 회계연도에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하위펀드가 수령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수익의 총액에서 그 회계연도 기간 동안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수수료 및 비용의 총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ACD는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감사와의 협의를 거쳐 세금, 수익균등화, 수익분배 이후 12개월 이내에 수령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수익, 발생 근거가 모호한 수익, 수익과 자본 사이의 이전 및 기타 감사와의 협의 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하나의 주식클래스에 분배하기로 최초 간주되는 금액은 동일 하위펀드 내의 다른 클래스의 수익이 비용을 하회할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

35.2.5 채무증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채무증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한다. 유효이자율법은 동 증권의 잔존기간동안 매입가격과 액면가격의 차이를 상각하는 이자계산방법이다.

35.2.6 공유 주식의 공동주주 중 최초 기명된 주주에게 분배할 경우, 단독 주주에게 분배한 것과 같이 본 펀드 및 ACD는 면책된다.

35.2.7 하위펀드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 회계연도 동안 누적된다. 만약 회계연도 만료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순수익이 주주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자산운용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주주간의 배당 흐름을 조절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 배당 가능한 수익을 한도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모든 잔존하는 수익은 관련규정에 따라 분배된다.

35.3 2개 미만(1개)의 하위펀드

최초 주식 발행 후 24개월 연속으로 2개 미만(1개)의 하위펀드의 주식만 발행된 경우, 이사들은 본 펀드의 종류(엠브렐라형)를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하위펀드 주식을 발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24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또는 청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5.4 연간보고서

35.4.1 본 펀드는 각 회계연도가 만료되기 4개월 전에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간회계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반기보고서를 발간한다. 주주들은 연간 및 중간회계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다.

35.4.2 유로화 주식클래스의 투자자는 연간 및 중간회계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다.

35.5 본 펀드의 서류



35.5.1 아래의 서류들은 수수료 없이 매 거래일 영국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Laurence Pountney Hill, London EC4R 0HH에 소재한 ACD의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35.5.1.1 본 펀드의 가장 최근 연간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35.5.1.2 정관 및 그 개정본;

주주는 위 주소에서 상기 서류들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ACD는 재량에 의하여 복사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35.5.1.3 하위펀드와 관련한 위험관리방법, 그러한 위험관리에 적용되는 양적 제한 및 주요 투자분야에 있어서의 위험 및 성과의 진전사항.

36. 기타 문의

본 펀드의 운영 및 판매에 대한 문의는 M&G Customer Relations, PO Box 9039, Chelmsford CM99 2XG에 위치한 ACD의 고객관계부서(Customer Relations Department) 또는 South Quay Plaza, 183 Marsh Wall, London E14 9SR에 소재한 재정 옴부즈맨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유로화 주식클래스의 투자자들은 별첨 III.에 기재된 관련 감독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37.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판매

본 펀드의 주식은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판매된다.

38. 하위펀드의 판매

하위펀드는 모든 개인투자자(retail investors)에 대하여 판매될 수 있다.



별첨 I. 본 펀드의 자산운용 및 차입권한

각 하위펀드의 자산은 당해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하나, 본 투자설명서의 본 장 및 공동투자기구(UCITS Schemes)에 적용되는 관련규정 제5장 (신공동투자기구규정집, 이하 본 장에서는 “COLL”이라 함) 5.2절 내지 5.5절에서 정한 투자제한에 구속된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아래 요약된 바와 같이 각 하위펀드에 대하여 적용된다.

1. 투자의 일반원칙

1.1 본 펀드의 정관에서는 ACD가 COLL 제5장을 준수하는 공동투자기구에게 허용되는 자산운용 및 차입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CD는 아래 기재된 자산운용 및 차입권한에 따라 본 펀드를 운용한다.

2.1 ACD의 투자방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위펀드의 자산이 전부 투자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수준의 현금이 유지되도록 정하고 있다.

2. 위험의 안정적인 분산

2.1 ACD는, 해당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을 고려하여, 위험의 신중한 분산 하에 하위펀드의 예탁자산이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장

3.1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위펀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하위펀드의 자산 또는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1.1 당해 하위펀드가 자산의 이전 또는 권리의 양도를 통하여 처분의무 및 기타 유사한 의무를 즉시 이행할 수 있고

3.1.2 그러한 계약의 체결 당시 하위펀드가 제3.1.1항의 자산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3.2 위 제3.1항은 예금 및 COLL 제5.2.22(3)의 특정한 파생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공동투자기구 - 허용되는 예탁자산의 종류

하위펀드의 예탁자산은, COLL 제5항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조건으로 하여 COLL 제5.2절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에 명시된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1 양도성 유가증권;

4.2 승인된 단기금융상품;

4.3 공동투자기구의 수익증권;

4.4 파생상품 및 선도거래;

4.5 예금; 및

4.6 동 펀드의 운용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동산 및 부동산;

4.7 신중한 위험분산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준수되는 한 분산에 대한 요건은 하위펀드에 관한 인가 명령의 효력일 이후 6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전(혹은 초기 청약의 개시일이 이보다 더 늦을 경우 동 일자)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4.8 하위펀드는 부동산이나 기타 유형자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

5. 양도성 유가증권

5.1 양도성 유가증권은 인가대상투자물에관한규정(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제76조(주식 등), 제77조(채무를 발생시키거나 확인하는 증서), 제78조(정부 기타 공공유가증권), 제80조(유가증권 증서)에 해당하는 투자물을 의미한다.

5.2 투자물의 권리가 양도될 수 없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양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성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5.3 법인이 발행하고 인가대상투자물에관한규정(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 제76조(주식 등), 제77조(채무를 발생시키거나 확인하는 증서)에 해당하는 투자물에 대하여 위 제4.2항을 적용할 경우, 그러한 투자물의 법인 또는 그러한 법인의 소속원 또는 주주의 동의는 필요치 않을 수 있다.

5.4 일정한 투자물의 보유자가 투자물 발행인의 채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러한 투자물과 관련하여 투자물의 보유자가 당시 변제하지 않은 부분만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그것은 양도성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6.1 하위펀드는 특정 양도성 유가증권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당해 양도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6.1.1 양도성 유가증권의 보유로 인해 하위펀드가 입을 수 있는 잠재 손실이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6.1.2 적격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양도성 유가증권의 유동성이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해야 할 ACD의 의무이행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다. (COLL 제6.2.16R(3) 참조);

6.1.3 아래와 같이 신뢰할 만한 가치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6.1.3.1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의 경우, 시장가격 또는 발행인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치산출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격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산출되는 경우;

6.1.3.2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는 않는 양도성 유가증권의 경우, 양도성 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제공하는 정보 또는 적정한 투자 리서치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가치산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6.1.4 아래와 같이 적정한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6.1.4.1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의 경우, 양도성 유가증권 또는, 필요한 경우, 양도성 유가증권의 포트폴리오에 관한 정기적이고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가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

6.1.4.2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의 경우, ACD가 양도성 유가증권 또는, 필요한 경우, 양도성 유가증권의 포트폴리오에 관한 정기적이고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6.1.5 유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6.1.6 이러한 위험이 ACD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의해 적정하게 포착되어야 한다.

6.2 ACD가 달리 판단해야 할 근거가 될 정보가 있지 않는 한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는 특정 양도성 유가증권은 아래의 전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2.1 적격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해야 할 ACD의 의무이행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리고

6.2.2 유통이 가능하다.

6.3 하위펀드 가치의 5%를 초과하여 워런트에 투자하지 않는다.

7. 양도성 유가증권을 구성하는 폐쇄형 펀드

7.1 폐쇄형 펀드의 수익증권은 하위펀드의 투자 목적상 양도성 유가증권으로 간주된다. 다만 제6항의 양도성 유가증권 요건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1.1 폐쇄형 펀드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으로 구성되는 경우

7.1.1.1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7.1.1.2 당해 펀드를 위해 제 3 자가 자산운용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인은 투자자 보호의 목적상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는

7.1.2 폐쇄형 펀드가 계약법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경우

7.1.2.1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지배구조에 준하는 기업지배구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7.1.2.2 투자자 보호의 목적상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8. 다른 자산과 연계되는 양도성 유가증권

8.1 하위펀드는 하위펀드의 투자 목적상 양도성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다른 투자물에 투자할 수 있다. 단, 투자물은

8.1.1 전술한 제6항에 명시되어 있는 양도성 유가증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8.1.2 하위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과 상이한 다른 자산의 성과에 의해 담보되거나 그에 연계되어야 한다.

8.2 제8.1의 투자물이 파생상품 요소(COLL 5.2.19R(3A) 참조)를 포함하는 경우 파생상품 및 선도거래에 관한 본 절의 요건이 그 요소에 적용된다.



9. 승인된 단기금융상품

9.1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은 자금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유동성이 있으며 어떠한 시점에서도 그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는 단기금융상품이다.

9.2 아래에 해당할 경우 단기금융상품은 자금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9.2.1 발행 시점의 만기가 397일 이내이다.

9.2.2 잔존만기가 397일 이내이다.

9.2.3 최소한 매 397일마다 자금시장 여건에 맞는 정기적인 수익률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또는

9.2.4 제9.2.1 또는 제9.2.2에 명시되어 있는 만기를 가지거나 또는 제9.2.3에 명시되어 있는 수익률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신용 및 금리 위험을 포함하는 위험요소를 지닌다.

9.3 단기금융상품은 적격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해야 할 ACD의 의무를 고려하여 단기간에 제한적인 비용으로 매각이 가능할 경우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COLL 6.2.16R(3) 참조).

9.4 단기금융상품은 만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가치산출 시스템이 있을 경우 어떤 시점에서도 그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9.4.1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간에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될 수 있는 투자물의 가치에 따라 ACD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9.4.2 시장 데이터 또는 상각비용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가치산출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경우

10. ACD가 다른 판단을 내릴 근거가 될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자금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는 단기금융상품은 유동성이 있으며 또한 어떤 시점에서도 그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1. 일반적으로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

11.1 하위펀드에 편입되는 양도성 유가증권 및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은



11.1.1 (제12.3 항에서 명시된 바대로)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거나; 또는

11.1.2 (제12.3.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적격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

11.1.3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지 않는 경우 제13.1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이거나;
또는

11.1.4 아래와 같이 최근에 발행된 양도성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11.1.4.1 적격시장에 편입되기 위한 신청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확약이 발행조건에 포함되어야 하며,

11.1.4.2 적격시장으로의 편입이 발행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1.2 그러나 제11.1에 명시되지 않은 양도성 유가증권 및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하위펀드 예탁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2. 적격시장체제: 목적

12.1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위펀드의 투자물이 거래되거나 취급되는 시장은 그러한 투자물의 취득시부터 매도시까지 적절한 자격(“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12.2 시장이 더 이상 적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장의 투자물은 더 이상 승인된 유가증권이 아니다. 승인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10%의 투자제한 룰이 적용된다. 적격시장이 향후 그 적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위와 같은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12.3 규제의 목적상 아래의 시장들은 적격인 것으로 다루어진다:

12.3.1 규제시장; 또는

12.3.2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내의 규제된 시장으로서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에 공개된 시장

12.3.3 제12.4항에 해당하는 시장

12.4 제12.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장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관련규정 제5장의 적용시 적격시장인 것으로 본다.



12.4.1 ACD가, 보관회사와 협의하거나 보관회사에 통지한 후, 당해 시장이 예탁자산을 투자하거나 취급하는 데 적절하다고 결정하고;

12.4.2 그러한 시장이 본 투자설명서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12.4.3 보관회사가 합리적인 주의로써 아래와 같이 결정한 경우:

(a) 그러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물을 위하여 적절한 내용의 보관약정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 및

(b) ACD가 적격시장이라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12.5 제12.4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장이, 규제되고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외국 규제당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거래소로서 또는 자기규제기구로 인정되며 공공에 공개되고 투자자의 주문에 대하여 자본 또는 소득의 제한 없는 이전을 위한 적합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시장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12.6 각 하위펀드에 대한 적격시장은 별첨 II.에 기재되어 있다.

13. 규제 대상 발행인이 발행한 단기금융상품

13.1 하위펀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는 상품 이외에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13.1.1 발행 증권 또는 발행인이 투자자 및 저축의 보호 목적상 규제 대상인 경우; 그리고

13.1.2 아래의 제14항에 의거하여 발행되거나 또는 보증되는 상품

13.2 적격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이외에,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단기금융상품 또는 그 발행인은 투자자 및 저축 보호 목적상 규제 대상인 것으로 간주된다.

13.2.1 당해 상품이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인 경우;

13.2.2 아래의 제15항에 의거하여 당해 상품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당해 상품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정보 포함); 그리고

13.3 상품의 양도가 자유로운 경우.



14. 단기금융상품의 발행인 및 보증인

14.1 하위펀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14.1.1 아래의 기관에 의해 발행되거나 보증되는 경우

14.1.1.1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중앙정부 또는 연방일 경우 연방을 구성하는 회원국 중 하나;

14.1.1.2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의 지방 정부;

14.1.1.3 유럽중앙은행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중앙은행;;

14.1.1.4 유럽연합 또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14.1.1.5 비유럽경제지역(non-EEA) 국가 또는 연방일 경우 연방을 구성하는 회원국 중 하나;

14.1.1.6 하나 이상의 유럽경제지역(EEA) 국가가 속해 있는 공공 국제기구; 또는

14.1.2 적격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일 경우; 또는

14.1.3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14.1.3.1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y law)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의한 건전성 감독의 대상인 경우; 또는

14.1.3.2 건전성 규정의 적용 대상이고 이를 준수하여 FSA 가 최소한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y law) 규정만큼 엄격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14.2 건전성 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이를 준수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인 경우 제14.1.3.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4.2.1 유럽경제지역(EEA)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14.2.2 OECD 10개국 중 하나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14.2.3 최소한 투자적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4.3 발행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당해 발행인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정이 최소한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y Law)의 규정만큼 엄격하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

15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적정한 정보

15.1 제14.1.2항에 명시된 또는 COLL5.2.10E(G)에 명시된 유형의 기관에 의해 발행되는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또는 제14.1.1.2에 명시된 기관 또는 제14.1.1.6에 명시된 공공 국제기구에 의해 발행되지만 제14.1.1.1에 명시된 중앙정부에 의해 보증되지 않는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15.1.1 발행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제3자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서 발행증권 또는 발행 프로그램 그리고 발행 이전의 발행인의 법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정보;

15.1.2 정기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수정보완 되는 신규정보; 그리고

15.1.3 발행증권 및 발행프로그램에 관한 사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

15.2 제14.1.3에 명시된 기관에 의해 발행되거나 보증되는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15.2.1 발행증권 또는 발행 프로그램 또는 발행 이전의 발행인의 법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정보;

15.2.2 정기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수정보완 되는 신규정보; 그리고

15.2.3 발행증권 및 발행프로그램에 관한 사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 또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투자에 따른 신용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15.3 아래에 해당하는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15.3.1 제 14.1.1.1, 제 14.1.1.4 또는 제 14.1.1.5 에 명시되는 경우; 또는

15.3.2 제 14.1.1.2 에 명시된 정부당국 또는 제 14.1.1.6 에 명시된 공공 국제기구에 의해 발행되며 제 14.1.1.1 에 명시된 중앙정부가 보증하는 경우;

15.4 발행증권 또는 발행 프로그램 또는 발행인의 발행 이전 법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16. 분산투자(Spread): 일반사항

16.1 분산투자에 관한 본 원칙은 정부 및 공공 유가증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6.2 이러한 요건과 관련하여, EEC지침83/349 (Directive 83/349/EEC)의 통합계정의 목적상 동일그룹에 속하거나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동일그룹에 포함된 회사는 단일개체로 간주된다.

16.3 예탁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여 단일개체에 예금을 예치할 수 없다.

16.4 예탁자산 가치의 5%를 초과하여 단일개체가 발행한 양도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16.5 예탁자산 가치의 40%까지는 제16.4항의 5% 한도가 10%까지 상향될 수 있다. 40%의 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적용되지 않는다.

16.6 하위펀드가 단일개체가 발행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에 5% 이상을 투자하였을 때 커버드본드(Covered Bond)에 대해서는 제16.4항의 5% 제한이 예탁자산 가치의 25%까지 상향될 수 있고 총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가치는 예탁자산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16.7 제16.4항 및 제16.5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한 유가증권을 표창하는 증서는 당해 유가증권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16.8 단일개체와의 장외파생 거래로부터 발생한 익스포저는 예탁자산 가치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거래상대방이 승인된 은행일 경우 한도는 10%로 상향된다.

16.9 예탁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여 동일그룹 (제16.2항에 언급된)이 발행한 양도성 유가증권 및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16.10 제23장(집중투자)과 관련하여 제16.4, 제16.5, 제16.7, 및 제16.9항에 명시된 제한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예탁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여 아래 목적물 중 둘 이상에 투자할 수 없다.

16.10.1 단일개체가 발행한 양도성 유가증권(커버드본드 포함) 또는 승인된 단기금융상품; 또는

16.10.2 단일개체에 대한 예치금; 혹은

16.10.3 단일개체와의 장외 파생거래로부터 발생한 익스포저(exposure)



17. 위험분산: 정부 및 공공 유가증권

17.1 상기의 제한들은 정부 및 공공 유가증권(“공공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유가증권에 대한 제한은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다.

17.2 단일개체가 발행한 공공유가증권에 대하여 예탁자산 가치의 3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공공유가증권에 투자될 수 있는 금액이나 1회 발행시의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17.3 다만, 아래의 조건 하에 하위펀드는 어느 한 개체가 발행한 공공유가증권에 예탁자산 가치의 3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17.3.1 ACD가 그러한 공공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관회사와 협의하였고, 그러한 협의의 결과 ACD가 공공유가증권의 발행인이 인가된 펀드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자라고 판단할 것;

17.3.2 당해 예탁자산 가치의 30%를 초과하여 공공유가증권의 어느 한 1회 발행분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17.3.3 당해 예탁자산이, 당해 공공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다른 발행인에 의한, 적어도 6회 이상의 다른 발행분에 대하여 투자된 것일 것;

17.3.4 FSA가 요구하는 공시가 이루어질 것

17.4 제17.3항의 규정은 별첨 III.에 기재된 하위펀드 중, 당해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일정한 유가증권(투자목적 및 방침에 기재되어 있음)에 대해 하위펀드 예탁자산 가치의 3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하위펀드에 대하여 적용된다.

17.5 공공유가증권에 관련하여:

17.5.1 발행, 기발행 및 발행인은 보증, 기보증 및 보증인을 포함하며;

17.5.2 상환일, 이자율, 보증인 또는 기타 발행의 중대한 조건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별도의 발행으로 본다.

17.6 전술한 제16.1항에도 불구하고 제17.2항 및 제17.3항을 조건으로 하여, 제16.10항에 명시된 단일개체인에 관한 20%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발행하는 정부 및 공공 유가증권은 감안되어야 한다.

18. 공동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18.1 하위펀드 가치의 5%까지 아래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투자기구에 투자될 수 있다.

18.1.1 공동투자기구(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파생거래의 활용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예탁자산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의 이용이 제한됨). 본 공동투자기구에는 유가증권 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상품 투자기구가 포함된다; 또는

18.1.2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s270의 규정에 따른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특히 예탁자산 가치의 10%를 초과하여 공동투자기구의 지분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가된 공동투자기구.

18.2 ACD나 ACD의 관계회사에 의하여 관리되는 다른 공동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상 그러한 투자기구의 자산에 ACD나 ACD의 관계회사에 의하여 관리되는 다른 공동투자기구의 주식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COLL 5.2.16R의 수수료와 관련한 규정이 수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18.3 하위펀드는 본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에 투자할 수 없으나 다른 회사의 하위펀드의 주식에는 투자할 수 있다.

19. 주금의 전부 및 일부 미납 주식에 대한 투자

주금이 미납된 양도성 유가증권 또는 승인된 단기금융상품은 납부가 요구되는 경우 COLL 제5장의 규정을 위반함이 없이 미납분에 대해 현재 요청되고 있는, 그리고 잠재적으로 요청될 금액이 하위펀드에 의해 지급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될 수 있다.

20. 위험관리

ACD는 하위펀드의 포지션이 안고 있는 위험 및 당해 포지션이 하위펀드 전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주기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 있는, 보관회사에 의해 검토된 위험관리프로세스를 사용해야 한다.

21. 예금에 대한 투자

하위펀드는 승인된 은행에 한해서 예금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요구시 상환 받거나 또는 인출할 권리를 지녀야 하며 만기는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2. 중대한 영향

- 22.1 본 펀드는, 아래 각각의 경우, 한 법인이 발행하고 그러한 법인의 주주총회에서의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의결권을 갖고 있는 양도성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 22.2 유가증권의 취득 직전 기준으로, 하위펀드가 보유할 유가증권의 총계가 하위펀드로 하여금 그 법인의 사업 영위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또는
- 22.3 유가증권의 취득이 본 펀드에 위와 같은 영향력 내지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 22.4 제22.3항과 관련하여, 본 펀드가 자신이 보유하는 양도성 유가증권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법인의 양도성 유가증권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의 일시정지는 고려하지 않음), 본 펀드는 그 법인의 사업 영위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3. 집중투자

본 펀드는:

- 23.1 아래와 같은 양도성 유가증권(채무증서 제외)을 취득할 수 없다.
- 23.1.1 양도성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 및
- 23.1.2 그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10%를 초과하는 것.
- 23.2 어느 한 단일개체가 발행한 채무증서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 23.3 어느 한 공동투자기구의 지분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 23.4 어느 한 단일개체가 발행한 단기금융상품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 23.5 취득 당시 관련된 투자의 순발행금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23.2항 내지 23.4항의 제한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24. 담보



24.1 FSA규정은 어떠한 투자거래 또는 보유로 인한 의무가 COLL 제5의 제한 위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거래의 체결 또는 투자물의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면 신주인수권 및 주금의 전부/일부 미납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이를 승낙 또는 인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 그러한 원칙 하에서 하위펀드의 가능한 최대채무는 마찬가지로 담보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4.2 COLL 규정은, 거래의 체결, 보유 기타 유사 거래가 담보될 경우에 한하여, 투자거래가 체결되거나 투자물이 보유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24.2.1 그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위펀드는 담보와 관련한 다른 의무를 충족하여야 하며;

24.2.2 담보를 위한 자산은 중복하여 사용될 수 없다.

25.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25.1 본 펀드는 제25항에서 명시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efficient portfolio management, 이하 “EPM”)을 위한 거래를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가령, 하위펀드의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25.2 파생상품 거래의 기초자산은 투자기구가 추구하게 되는 아래의 항목 일부 또는 전체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25.2.1 제11항에(일반적으로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양도성 유가증권;

25.2.2 제11항에(일반적으로 적격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는 양도성 유가증권과 단기금융상품)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승인된 단기금융상품

25.2.3 제21항(예금에 대한 투자)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예금;

25.2.4 본 규정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파생상품;

25.2.5 제18항(공동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공동투자기구 지분;

25.2.6 COLL 제5.2.20AR(금융 지수가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지수;;

25.2.7 금리;



25.2.8 환율; 그리고

25.2.9 통화.

25.3 허용되는 EPM거래(대주거래를 제외)라 함은 승인된 파생거래시장에서 취급 또는 거래되는 파생상품 거래(예를 들면 옵션, 선물 또는 차익거래)를 말하며, 여기에는 장외 선물거래, 옵션 또는 옵션과 유사한 차익거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합성선물거래가 포함된다. 본 펀드는 승인된 파생금융 시장 또는 적격 파생금융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적격파생금융시장이란, ACD가 보관회사와 협의하여, 적격시장에 관하여 FSA가 수시로 발행한 관련규정 및 지침의 적격기준에 부합하고 투자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한 거래소를 의미한다.

25.4 본 펀드의 적격파생금융거래소는 별첨 II에 기재되어 있다.

25.5 새로운 적격파생금융거래소는 ACD가 본 투자설명서를 수정한 이후에 관련규정에 따라 하위펀드에 추가될 수 있다.

25.6 선도거래는 승인받은 상대방(적격인 투자회사, 금융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펀드의 예탁자산을 보관회사에게 이전하게 하는 파생금융 또는 선도거래는, 본 펀드가 그러한 예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ACD가 그러한 거래로 인한 예탁자산의 이전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25.7 EPM에 사용될 수 있는 예탁자산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아래 3가지의 광범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5.7.1 ACD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거래가 EPM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적절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나 위험을 낮출 목적으로 실행된 거래는 그 거래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EPM 거래와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비용 또는 위험을 낮춰야 하고, 자본 또는 수익의 창출을 위해 실행된 거래가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25.8 EPM은 투기적 거래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25.8.1 EPM 거래의 목적은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 위험의 감소
- 비용의 절감
- 추가적인 자본 또는 수익의 창출

25.8.1.1 위험의 감소를 위하여, ACD는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를 환위험성이 높은 화폐로부터 위험이 낮은 화폐로 전환하기 위한 이종 통화 간의 헤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주가지수 거래를 활용하여 노출위험을 하나의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소위 “전술적 자산분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5.8.1.2 매매되는 주식의 가격변동 효과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 또는 옵션 계약을 통한 비용 절감을 기한다.

25.8.1.3 위험의 감소와 비용의 절감 목적을 위하여, **ACD**는 일시적으로 전술적 자산분배를 위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ACD**는 예탁자산을 매수 또는 매각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자산분배를 통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자산의 노출위험 전환을 기할 수 있다. 만약 펀드의 **EPM** 거래가 양도성 유가증권의 취득이나 향후의 취득과 관련되는 경우, **ACD**는 본 펀드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양도성 유가증권에 투자할 것을 실질적으로 의도했어야 하며, 그러한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도가 실현되어야 한다.

25.8.1.4 위험이 없거나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위험 수준 하에서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의 자본 또는 수익이 추가 발생한다는 것은, **ACD**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가 그러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경우(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본 또는 수익은, 가격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거나 콜옵션, 풋옵션 매도로 인한 프리미엄의 수취(설령 수익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또는 관련규정에서 허용한 대주거래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목적은 본 펀드에 의하여 취득되거나 취득될 예정인 예탁자산 및 본 펀드로 한달 이내로 지급될 것으로 예정된 현금과도 관련되어야 한다.

25.9 모든 **EPM** 거래는 개별적으로 적절한 종류의 예탁자산에 의하여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즉, 자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래의 경우에는 적절한 양도성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고, 금전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래의 경우에는 현금, 유사 현금, 대여금 또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양도성 유가증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장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EPM** 거래 이행을 위하여 자산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EPM** 거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산이 충분할 것이 요구된다. **EPM**거래의 보장을 위하여 예탁자산과 현금은 오직 일회 사용될 수 있으며, 대주거래의 대상이 된 예탁자산은 사용될 수 없다. 연속적인 환차입 (즉, 환율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되는 대출) 거래에 의한 **EPM** 대출거래는 보장될 필요가 없다.

26. 대주거래

26.1 위에서 설명한 **EPM**의 일환으로써, 본 펀드 또는 하위 펀드의 요청에 따라 보관회사는 환매조건부계약 (**Repo Contracts**) 또는 대주거래를 할 수 있다. 본 펀드 또는 보관회사는 동일한 종류 및 동일한 수량의 유가증권을 본 펀드가 추후에 반환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의 대가로서 대주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전달한다. 본 펀드 또는 보관회사는 추후에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도할 당시에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는다. 대주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26.2 환매조건부계약(Repo Contracts) 또는 대주거래는 1992년 과세가능한이익에대한과세에관한법을 제263B조에 따른 유형이어야 한다. 대주거래는 또한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7. 인수

27.1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를 위하여 관련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인수, 위탁인수 및 매출에 관한 거래를 할 수 있다.

28. 차입권한

28.1 ACD는 펀드의 지시와 관련규정의 제한 하에서, 예탁자산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적격 금융기관으로부터 본 펀드가 사용할 목적의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28.2 대여는 일시적이어야 하고, 지속되어서는 아니되며, 보관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3개월 이상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보관회사는 대여의 일시성이 상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여에 대하여 그러한 사전 동의를 할 수 있다.

28.3 ACD는 어떠한 시점에도 대여금이 예탁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8.4 위와 같은 대여에 관한 제한은 외환 헤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 대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첨 II. 적격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소

적격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소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위펀드는 아래의 시장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 a) 규제시장; 또는
- b)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내의 규제된 시장으로서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에 공개된 시장; 또는
- c) ACD가, 보관회사와 협의하거나 보관회사에 통지한 후, 해당 예탁자산을 투자하거나 취급하는 데 적절하다고 결정한 시장, 즉 아래 열거된 시장 또는 보관회사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한 다음과 같은 시장; (i) 해당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한 적절한 수탁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거나, (ii) ACD가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거쳐 적격시장이라고 결정한 시장

또한 하위펀드는 하위펀드 자산의 10% 이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양도성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다.

다음의 증권거래소는 적격시장으로 간주된다.

적격유가증권거래소

- 유럽

Switzerland	SWX (Swiss Stock Exchange)
Turkey	Istanbul Stock Exchange
Croatia	Zagreb Exchange

- 미주

Brazil	Bovespa (Bolsa de Valores de Sao Paulo)
Canada	Toronto Stock Exchange TSX Venture Exchange
Mexico	Bolsa Mexicana de Valores (Mexican Stock Exchange)
United States	New York Stock Exchange American Stock Exchange (AMEX) Boston Stock Exchange (BSE)



Chicago Stock Exchange (CHX)

The NASDAQ Stock Market,

USA OTC NASDAQ

National Stock Exchange

Pacific Stock Exchange

Philadelphia Stock Exchang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 의하여 주
거래자로서 간주되어 감독을 받는 자를 통하여 그러한
감독을 받는 동안 미합중국 정부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발행하는 양도성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

- 아프리카

South Africa

The JSE Securities Exchange

The Bond Exchange of South Africa (BESA)

- 아시아

Australia

The Australian Stock Exchange (ASX)

China

Shanghai Stock Exchange

Shenzen Stock Exchange

Hong Kong

Hong Kong Exchanges

Growth Global Enterprise Market (GEM)

India

The Bombay Stock Exchange Ltd

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

Indonesia

Jakarta Stock Exchange

Surabaya Stock Exchange

Japan

Tokyo Stock Exchange

Nagoya Stock Exchange

Osaka Securities Exchange

Sapporo Stock Exchange

JASDAQ

Korea

KRX



Malaysia	Bursa Malaysia Berhad
New Zealand	The New Zealand Stock Exchange
Philippines	Philippine Stock Exchange (PSE)
Singapore	Singapore Exchange (SGX)
Sri Lanka	Colombo Stock Exchange
Taiwan	Taiwan Stock Exchange Gre Tai (Taiwan OTC)
Thailand	The Stock Exchange of Thailand (SET)

- 중동

Israel	Tel Aviv Stock Exchange
---------------	-------------------------

적격파생상품거래소

- 유럽 EUREX

EUROPE	EUREX
Belgium	Eurolist, Brussels
Denmark	Copenhagen Stock Exchange
France	Eurolist, Paris
Germany	EUREX
Netherlands	Eurolist, Amsterdam
Switzerland	EUREX
UK	The 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and Options Exchange (Euronext LIFFE) The London Securities and Derivatives Exchange (OMLX)

- 미주

Canada	The Montreal Exchange
United States	Chicago Board of Trade (CBOT)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CBOE)

- 아프리카

South Africa	The South African Futures Exchange (SAFEX)
---------------------	--

- 아시아

Australia	Sydney Futures Exchange
Hong Kong	Hong Kong Exchange
Japan	Tokyo Stock Exchange Futures & Options Market Osaka Securities Futures & Options Market
Korea	KRX
New Zealand	New Zealand Futures Exchange
Singapore	Singapore Exchange (SGX)



별첨 III. 유로화 주식클래스 주주를 위한 정보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각 하위펀드의 선취수수료 (판매수수료)는 본문 제4장 판매수수료 및 관리보수 등 참조

1. 엠앤지 미국펀드 (M&G American Fund)

-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본 펀드의 목적은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북미지역(캐나다 포함)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재산의 전부가 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북미지역에 상장 또는 등록되거나 북미 내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
- 회계기준일: 8. 31.
- 수익분배일: 12.31. 또는 그 이전
- 최소투자금액, 수수료 및 비용 (유로클래스 A 기준)

최소 투자금액 (EURO €)	임의식	최초 추가 유지 (월별)	1,000 75 1,000 75 75
	적립식 환매액		
수수료 및 비용 (%)	선취수수료(투자금액대비) 환매(후취)수수료(환매액대비) ACD연간보수(순자산가치대비)		최대 5.25% 해당 없음 1.50%

- 행정대리인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의 ACD의 보수: 매년 순자산 가치의 0.15%
- 자산운용회사: 엠앤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리미티드(M&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평가시점: 영국시간 정오12시
- 설립일: 2001. 11. 1.

2. 엠앤지 아시안펀드 (M&G Asian Fund)

-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본 펀드의 유일한 목적은 장기적인 자본증식이다. 본 펀드는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아시아 지역(오세아니아 지역을 포함)의 다양한 유가증권에 투자한다.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전부가 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유가증권을 제외한 글로벌 유가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 회계기준일: 8. 31.
- 수익분배일: 12.31. 또는 그 이전



- 최소투자금액, 수수료 및 비용 (유로클래스 A 기준)

최소 투자금액 (EURO €)	임의식	최초 추가 유지 (월별)	1,000 75 1,000 75
	적립식 환매액		75 75
수수료 및 비용 (%)	선취수수료(투자금액대비) 환매(후취)수수료(환매액대비) ACD연간보수(순자산가치대비)		최대 5.25% 해당 없음 1.50%

- 행정대리인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의 ACD의 보수: 매년 순자산 가치의 0.15%
- 자산운용회사: 엠앤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리미티드(M&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평가시점: 영국시간 정오12시
- 설립일: 2001. 11. 1.

3. 엠앤지 유럽펀드 (M&G Europe Fund)

-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펀드는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80% 이상을 유럽(영국 제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한다. 신탁재산의 전부가 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상장 또는 등록되었지만 유럽 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의 선정시 배당 소득도 부수적으로 고려된다.
- 회계기준일: 8. 31.
- 수익분배일: 12.31. 또는 그 이전
- 최소투자금액, 수수료 및 비용 (유로클래스 A 기준)

최소 투자금액 (EURO €)	임의식	최초 추가 유지 (월별)	1,000 75 1,000 75
	적립식 환매액		75 75
수수료 및 비용 (%)	선취수수료(투자금액대비) 환매(후취)수수료(환매액대비) ACD연간보수(순자산가치대비)		최대 5.25% 해당 없음 1.50%

- 행정대리인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의 ACD의 보수: 매년 순자산 가치의 0.15%
- 자산운용회사: 엠앤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리미티드(M&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평가시점: 영국시간 정오12시



- 설립일: 2001. 11. 1.

4. 엠앤지 유럽중소형주펀드 (M&G European Smaller Companies Fund)

-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본 펀드는 유럽의 소형주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회계기준일: 8. 31.
- 수익분배일: 12.31. 또는 그 이전
- 최소투자금액, 수수료 및 비용 (유로클래스 A 기준)

최소 투자금액 (EURO €)	임의식	최초 추가 유지 (월별)	1,000 75 1,000 75 75
	적립식 환매액		
수수료 및 비용 (%)	선취수수료(투자금액대비) 환매(후취)수수료(환매액대비) ACD연간보수(순자산가치대비)		최대 5.25% 해당 없음 1.50%

- 행정대리인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의 ACD의 보수: 매년 순자산 가치의 0.15%
- 자산운용회사: 엠앤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리미티드(M&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평가시점: 영국시간 정오12시
- 설립일: 2001. 11. 1.

5. 엠앤지 글로벌베이직펀드 (M&G Global Basics Fund)

-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본 펀드는 기초산업(1차 또는 2차 산업) 주식 및 그러한 산업을 서비스 하는 회사 주식에 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펀드로서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회계기준일: 8. 31.
- 수익분배일: 12.31. 또는 그 이전
- 최소투자금액, 수수료 및 비용 (유로클래스 A 기준)

최소 투자금액 (EURO €)	임의식	최초 추가 유지 (월별)	1,000 75 1,000 75
	적립식		



환매액		75
수수료	선취수수료(투자금액대비)	최대 5.25%
및 비용	환매(후취)수수료(환매액대비)	해당 없음
(%)	ACD연간보수(순자산가치대비)	1.75%

- 행정대리인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의 ACD의 보수: 매년 순자산 가치의 0.15%
- 자산운용회사: 엠앤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리미티드(M&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평가시점: 영국시간 정오12시
- 설립일: 2001. 11. 1.

6. 엠앤지 글로벌리더스펀드 (M&G Global Leaders Fund)

-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본 펀드는 장기적으로 토탈리턴(자본의 증식 및 배당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펀드매니저가 해당 섹터를 선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한다.
- 회계기준일: 8. 31.
- 수익분배일: 12.31. 또는 그 이전
- 최소투자금액, 수수료 및 비용 (유로클래스 A 기준)

최소 투자금액 (EURO €)	임의식	최초 추가 유지 (월별)	1,000 75 1,000 75 75
	적립식 환매액		
수수료	선취수수료(투자금액대비)		최대 5.25%
및 비용	환매(후취)수수료(환매액대비)		해당 없음
(%)	ACD연간보수(순자산가치대비)		1.75%

- 행정대리인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의 ACD의 보수: 매년 순자산 가치의 0.15%
- 자산운용회사: 엠앤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리미티드(M&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평가시점: 영국시간 정오12시
- 설립일: 2001. 11. 1.

7. 엠앤지 일본펀드 (M&G Japan Fund)

-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본 펀드는 일본의 경제전반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일본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회계기준일: 8. 31.
- 수익분배일: 12.31. 또는 그 이전
- 최소투자금액, 수수료 및 비용 (유로클래스 A 기준)

최소 투자금액 (EURO €)	임의식	최초 추가 유지 (월별)	1,000 75 1,000 75
	적립식 환매액		75
수수료 및 비용 (%)	선취수수료(투자금액대비) 환매(후취)수수료(환매액대비) ACD연간보수(순자산가치대비)		최대 5.25% 해당 없음 1.50%

- 행정대리인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의 ACD의 보수: 매년 순자산 가치의 0.15%
- 자산운용회사: 프루덴셜에셋매니지먼트싱가포르리미티드(Prudential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 평가시점: 영국시간 정오12시
- 설립일: 2001. 11. 1.

8. 엠앤지 범유럽펀드 (M&G Pan European Fund)

-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본 펀드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회사의 주식에 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토탈리턴(자본의 증식 및 배당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펀드는 유럽 이외에 소재한 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그 회사의 수입의 대부분이 유럽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유발되어야 한다.
- 회계기준일: 8. 31.
- 수익분배일: 12.31. 또는 그 이전
- 최소투자금액, 수수료 및 비용 (유로클래스 A 기준)

최소 투자금액 (EURO €)	임의식	최초 추가 유지 (월별)	1,000 75 1,000 75
	적립식 환매액		75
수수료 및 비용 (%)	선취수수료(투자금액대비) 환매(후취)수수료(환매액대비) ACD연간보수(순자산가치대비)		최대 5.25% 해당 없음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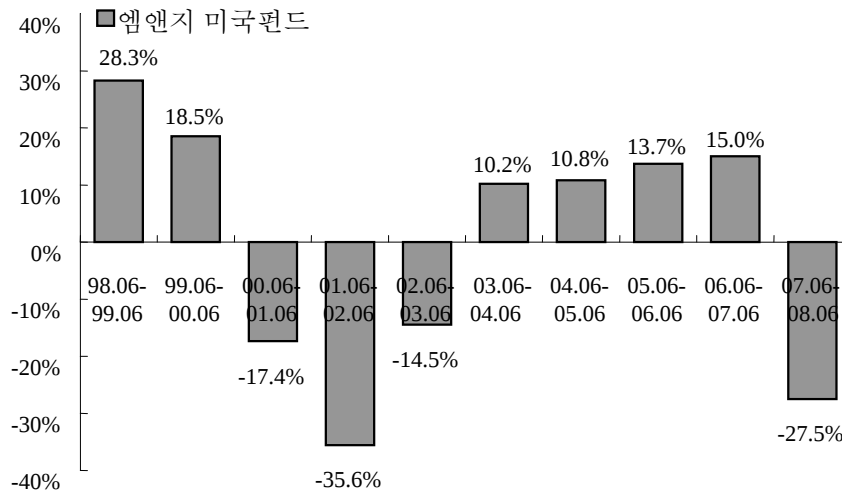


- 행정대리인 및 명의개서대리인으로서의 ACD의 보수: 매년 순자산 가치의 0.15%
- 자산운용회사: 엠앤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리미티드(M&G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평가시점: 영국시간 정오12시
- 설립일: 2001. 11. 1.



별첨 IV. 하위펀드별 운용성과 (유로화 주식클래스)

1. 엠앤지 미국펀드 (M&G American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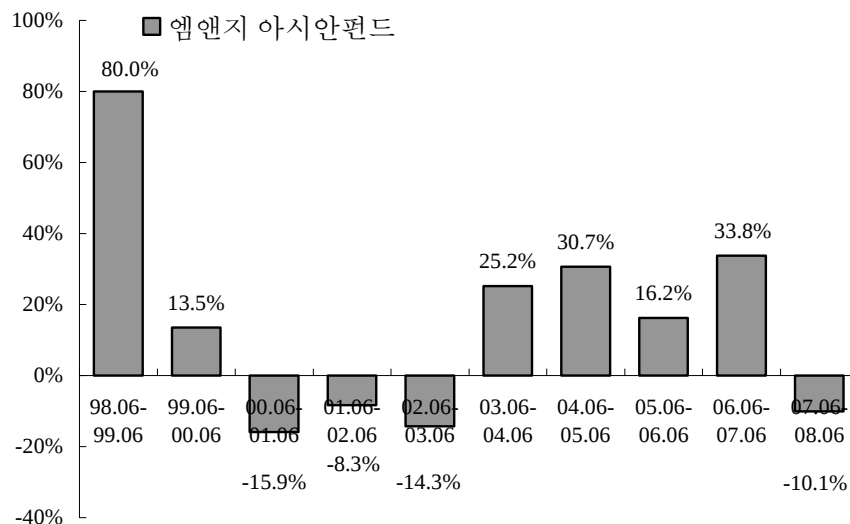


자료출처: Morningstar Inc., 10년, 재투자 반영, 유로클래스 A

지난 10년간의 누적 운용성과는 -20.0% 입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엠앤지 아시안펀드 (M&G Asian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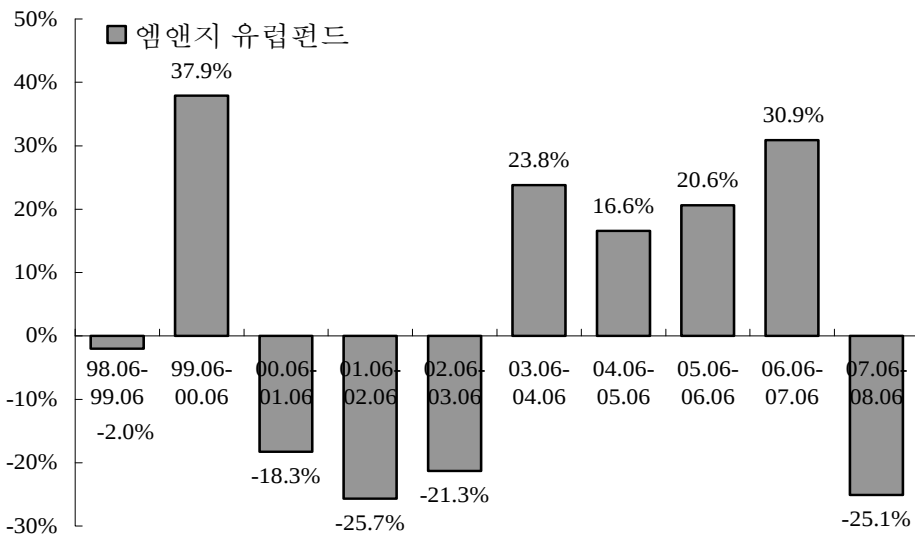
자료출처: Morningstar Inc., 10년, 재투자 반영, 유로클래스 A

지난 10년간의 누적 운용성과는 208.7% 입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엠앤지 유럽펀드 (M&G Europe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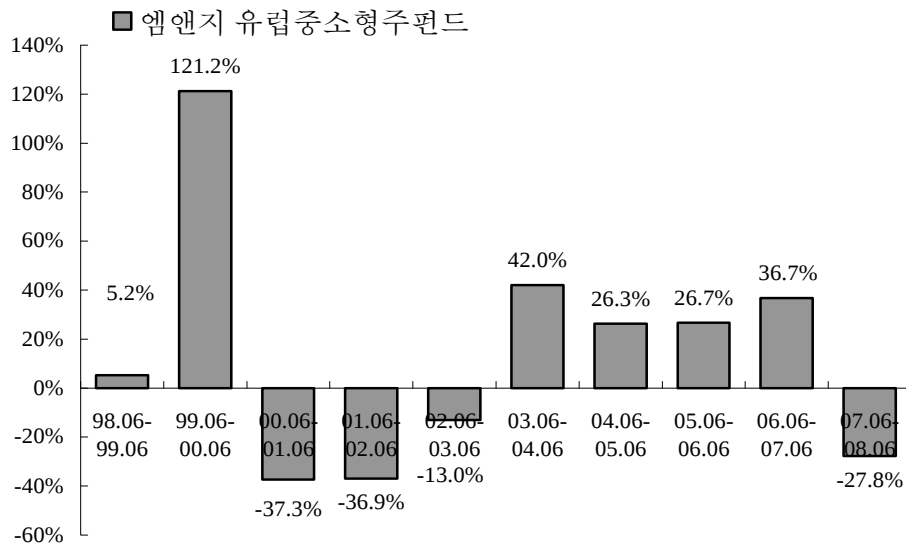


자료출처: Morningstar Inc., 10년, 재투자 반영, 유로클래스 A

지난 10년간의 누적 운용성과는 10.1% 입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엠앤지 유럽중소형주펀드 (M&G European Smaller Companies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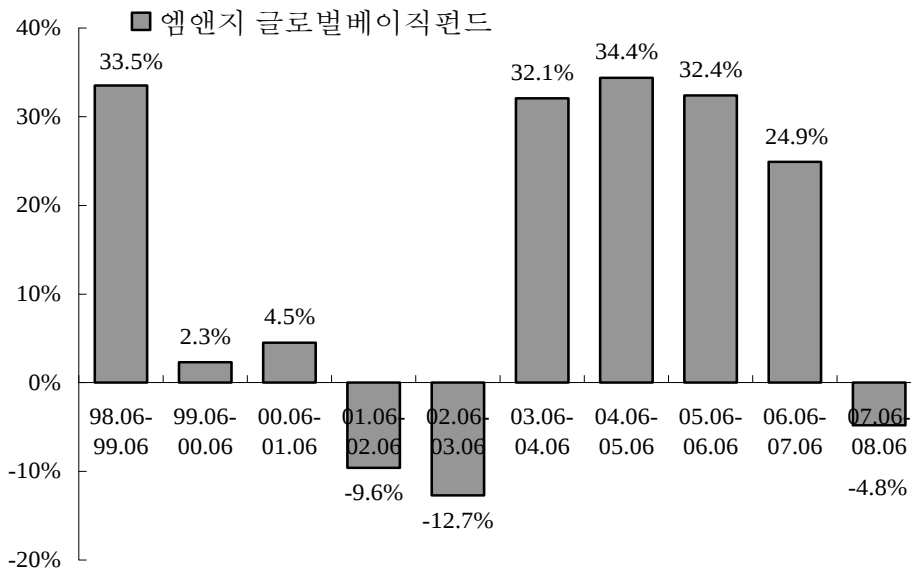
자료출처: Morningstar Inc., 10년, 재투자 반영, 유로클래스 A

지난 10년간의 누적 운용성과는 79.7% 입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엠앤지 글로벌베이직펀드 (M&G Global Basics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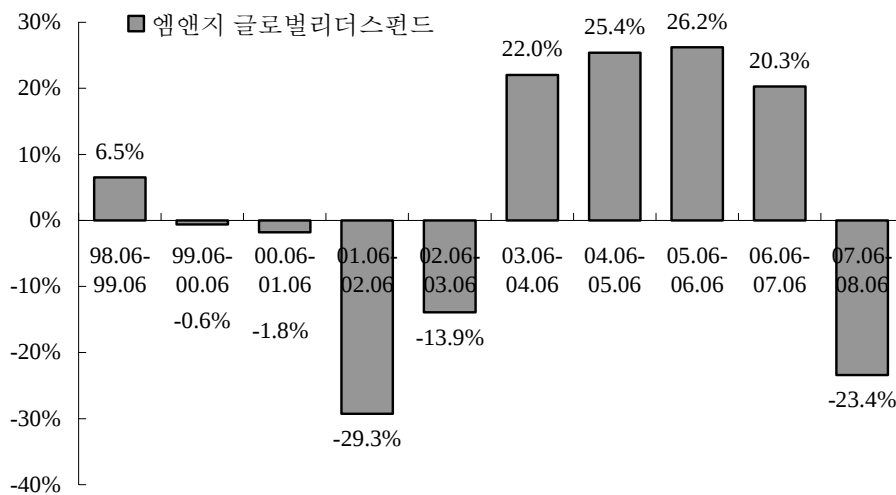


자료출처: Morningstar Inc., 10년, 재투자 반영, 유로클래스 A

지난 10년간의 누적 운용성과는 215.0% 입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엠앤지 글로벌리더스펀드 (M&G Global Leaders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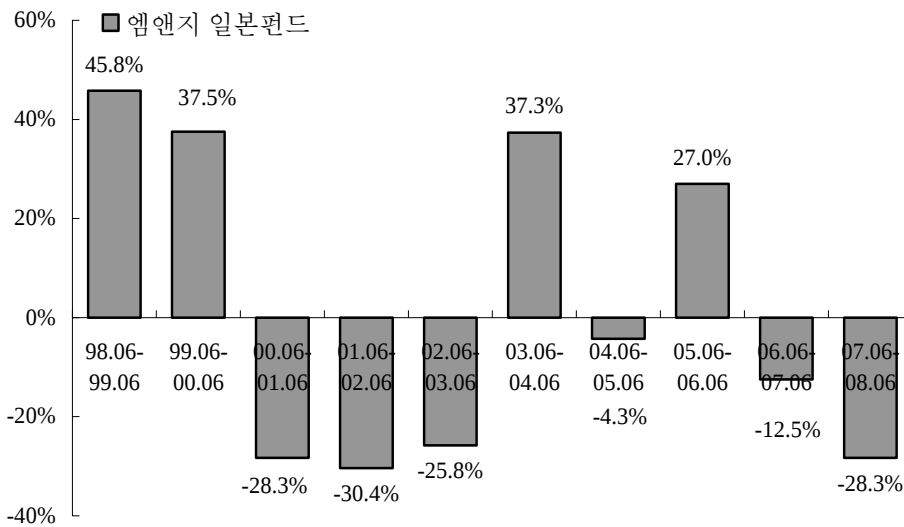
자료출처: Morningstar Inc., 10년, 재투자 반영, 유로클래스 A

지난 10년간의 누적 운용성과는 12.7% 입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엠앤지 일본펀드 (M&G Japan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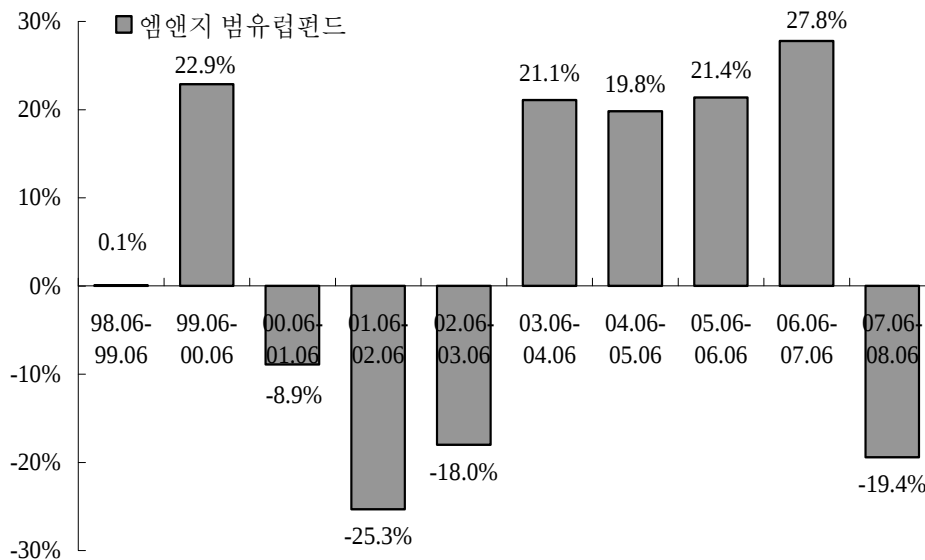


자료출처: Morningstar Inc., 10년, 재투자 반영, 유로클래스 A

지난 10년간의 누적 운용성과는 -22.4% 입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엠앤지 범유럽펀드 (M&G Pan European Fund)



자료출처: Morningstar Inc., 10년, 재투자 반영, 유로클래스 A

지난 10년간의 누적 운용성과는 24.5% 입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명칭: _____
- 판 매 일: _____
- 판매회사 및 점포명: 홍콩상하이은행 _____지점
- 판매직원: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환율변동 위험 포함)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환율변동 위험 포함)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